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진

-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기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서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심화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의존 행태를 억제시키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
 - 그러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지방비 부담,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모색
 - 이 연구는 현행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모의 순기능 제고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내 통계자료 및 법령관련 현황,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지원-선정, 집행, 평가’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및 인식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실태분석
 - 첫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실증 결과는 찾을 수 없었음(‘18년도 평균 지방비 부담

를 46.29% → '19년 44.5%). 다만,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전년도 대비 지방비 부담률 증가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음

- 둘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도 약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지역 인프라와 우수한 재정력으로 인해 공모사업의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셋째, 100억 이상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공모사업 금액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9년 수도권 3곳을 중심으로 평균 약 3,381억원의 사업비가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비수도권의 경우 평균 약 1,768억원의 사업비가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단계별 분석

- 첫째, 공모사업 선정 적절성과 시기의 적정성의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기준을 투명화 해야 하며, 그 추진 시기로 인해 이불용액 등 예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둘째, 공모사업 평가지표나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 사업의 목표치,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논의가 전개되었음
- 셋째, 운영 상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유발 요소가 존재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운영단계별 이슈,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5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재원 분담 체계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대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100억 이상)을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며, 단순히 지방비를 더 높게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등의 재원분담 불균형 행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회계처리의 사유로 산하기관 출자·출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제한하는 등 실제 국고보조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공모 추진 제한 등의 표준 지침을 설계해야 함
- 셋째, 중앙부처에서 공모과정에서 “중앙부처 예산확보→공모계획→공모→자치단체 선정”의 현행에서 “중앙부처 예산확보→공모계획→행정안전부 협의(신설)→공모→자치단체 선정”으로 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와 같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과정을 신설할 수 있음
- 넷째, 연례반복적인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포함하여 자치단체가 공모사업 유치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의 재분류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자체사업, 일반보조사업 외 공모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별 공모사업 건수 및 예산총액의 일정비율(%)이내 공모사업 추진토록 총량제 도입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및 주요 국가 사례	7
제1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9
1. 국고보조사업의 의의와 유형	9
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15
제2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19
1. 관련 법령 검토	19
2. 관리·운영 체계 검토	25
3. 중앙정부 정책 동향 검토	29
제3절 주요 국가의 사례	33
1. 미국	33
2. 일본	42
제3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실태분석	53
제1절 일반현황 분석	55
제2절 언론 동향 분석	62
제3절 수행실태 분석	80
제4절 운영단계별 문제점 분석	118

제4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사례	125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사례분석	127
1. 스마트시티 혁신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127
2. 00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30
3. 000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133
4. 00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135
제2절 사례조사 시사점	137
제5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13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1
제2절 정책제언	144
【참고문헌】	147

〈표 2-1〉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11
〈표 2-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상·자본보조사업(예시)	13
〈표 2-3〉 지방비 부담의 의무성 정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15
〈표 2-4〉 국고보조금 시행 연혁	16
〈표 2-5〉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17
〈표 2-6〉 회계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수와 규모	18
〈표 2-7〉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의 각종 조항과 특성	19
〈표 2-8〉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현황	24
〈표 2-9〉 공모사업 관리 조례 주요 내용	25
〈표 2-10〉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자 선정 기준(예시)	26
〈표 2-11〉 보조사업 연장 평가 기준	29
〈표 2-1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적합성 체크리스트(안)	30
〈표 2-13〉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주요 점검 사항	31
〈표 2-14〉 콜로라도주 보조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심사 중점 사항	35
〈표 2-15〉 보조사업 성과감사 지표(조지아주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37
〈표 2-16〉 플로리다 역사위원회 심사 기준 및 배점	40
〈표 2-17〉 플로리다 문화예술검토위원회 심사 기준 및 배점	42
〈표 2-18〉 2017년도 국고지출금 현황	45
〈표 2-19〉 2020년도 지방재정계획의 보조사업비(일반행정경비)의 일부	46
〈표 2-20〉 하수도사업에 관한 보조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람	48
〈표 3-1〉 최근 5년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기능별 분포	57
〈표 3-2〉 회계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수 분포	58
〈표 3-3〉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분포	60
〈표 3-4〉 키워드별 지자체 관심도 현황(2021)	65
〈표 3-5〉 분석 분류	67
〈표 3-6〉 보도기사의 현황(2011~2021)	68
〈표 3-7〉 광역별 기사 빈도 수(세부)	69
〈표 3-8〉 연도별 주요 키워드 빈도분석(2011~2021)	74

〈표 3-9〉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75
〈표 3-10〉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사내용 유형화(2011~2021)	77
〈표 3-11〉 2018-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83
〈표 3-12〉 2018-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84
〈표 3-13〉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 지방비부담률	86
〈표 3-14〉 수도권/비수도권 국고보조사업의 수	87
〈표 3-15〉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89
〈표 3-16〉 수도권/비수도권 신규 공모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90
〈표 3-17〉 금액구간 별 공모사업 건수(2018)	92
〈표 3-18〉 금액구간 별 공모사업 건수(2019)	93
〈표 3-19〉 금액구간 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94
〈표 3-20〉 부처별 공모사업 건수	97
〈표 3-21〉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101
〈표 3-22〉 분야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105
〈표 3-23〉 분야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106
〈표 3-24〉 회계주체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108
〈표 3-25〉 회계주체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109
〈표 3-26〉 법정/비법정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110
〈표 3-27〉 법정/비법정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111
〈표 3-28〉 경상/자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112
〈표 3-29〉 경상/자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113
〈표 3-30〉 정률/정액 기준보조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114
〈표 3-31〉 범위 정률 기준보조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114
〈표 3-32〉 기준보조율 대비 높은 지방비 사업	115
〈표 3-33〉 100억 이상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115
〈표 3-34〉 지역별 100억 이상공모사업 건수	116
〈표 3-35〉 수도권/비수도권 100억 이상 공모 사업 내역	117

〈그림 2-1〉 2019년도 사업분야별 국고보조금 교부율, 집행률	10
〈그림 2-2〉 2011-2021 국고보조사업 규모	10
〈그림 2-3〉 국고보조금 운용 평가 기준(예시)	28
〈그림 2-4〉 국가 예산과의 정합성	47
〈그림 3-1〉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55
〈그림 3-2〉 최근 5년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추이	60
〈그림 3-3〉 키워드 검색어 트렌드 현황(2011~2021)	64
〈그림 3-4〉 연도별 기사 빈도 현황(2011-2021.9)	71
〈그림 3-5〉 지역별 기사 빈도 현황(2011-2021.9)	71
〈그림 3-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도별 기사 건수 변화(2011~2021)	76
〈그림 3-7〉 2018-2019 전체/공모 국고보조사업의 수, 비율	82
〈그림 3-8〉 2018-19 지방비 부담률 변화	85
〈그림 3-9〉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단계와 정부 간 관계 도식화	118
〈그림 4-1〉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계획 예시	128
〈그림 4-2〉 00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도	131
〈그림 4-3〉 00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전경	135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배경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 실제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 의존 행태를 억제시키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
- 그러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사업자 선정 시 지방비 부담 수준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등 사실상 지방비 추가 부담을 강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그리고 소관 부처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공모·협약 형태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사·동일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자의적인 지방비 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중앙부처의 공모 시기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함. 특히 공모 시기가 늦어지게 될 때, 그 결과 사업비를 미처 집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불용액이 커지고 이는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모사업의 순기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목적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및 이해관계자 별 인식조사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현황조사, 사례조사를 통한 운영 측면,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별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 측면을 조사하여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지원-선정, 집행, 평가’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및 인식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중, 공모 사업으로 인한 구조 및 체계적 문제로 인한 영향을 고찰하고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실제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2019년 2개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토함

□ 공간적 범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검토함
- 해외사례를 통하여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함

□ 현황분석

- 국내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 실태를 파악함

□ 사례분석

- 17개 시·도 중에서 사례 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

□ 설문조사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
 - 이에 각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제2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및 주요 국가 사례

제1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제2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제3절 주요 국가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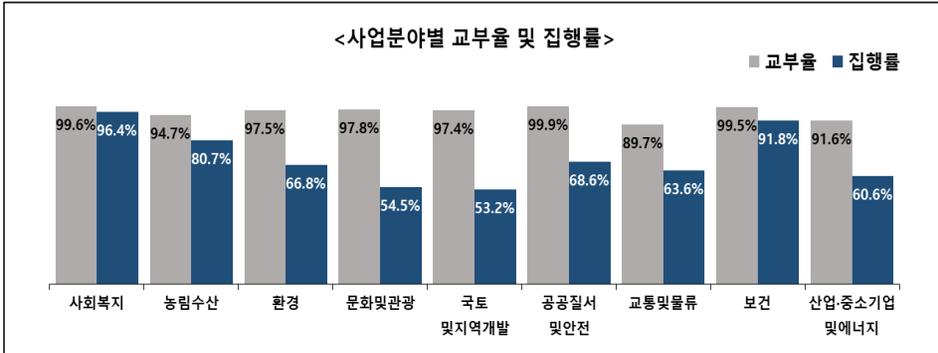
제1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1. 국고보조사업의 의의와 유형

□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 국고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총칭함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함
 - ※ 교부금은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을 경우 그 경비를 부담
 - ※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중 그 성질상 국가의 책임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 협의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정사업의 실시를 권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하게 되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matching fund) 확보와 정산이 필수임
 -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4개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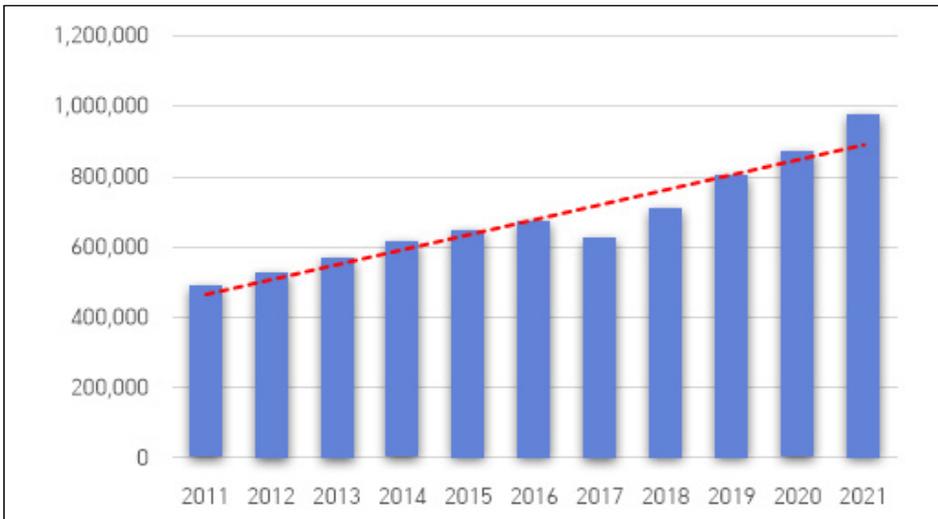
〈그림 2-1〉 2019년도 사업분야별 국고보조금 교부율, 집행률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보고.

-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97.5조원이고, 전체 국가예산 558조원 중 1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2〉 2011-2021 국고보조사업 규모



출처: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실무적으로는 재원인 국고보조금을 부담금, 급부금, 장려비, 위탁금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해 사용하며, 예산서의 비목으로 민간 경상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자치단체 경상 보조, 자치단체 자본 보조, 해외 경상 이전, 해외 자본 이전으로 분류함

○ (중앙부처/회계별 규모)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을 회계별, 중앙부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계	748,016	507,786	65,506	88,664	86,060
대법원	166	166			
기획재정부	3,219				3,219
교육부	2,332	2,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4	159	126		
외교부	68	68			
통일부	141	118			23
법무부	597				597
국방부	0.5				0.5
행정안전부	36,086	29,109	6,977		
문화체육관광부	15,976	1,466	6,472	555	7,482
농림축산식품부	50,358	72	7,792	13,171	29,324
산업통상자원부	9,393	3,408	3,493	203	2,289
보건복지부	443,647	427,227	3,365	546	12,509
환경부	64,873	179	6,170	51,341	7,183
고용노동부	3,348	786	2,502		60
여성가족부	9,588	3,444	452		5,692
국토교통부	72,242	25,577	22,237	8,455	15,974
해양수산부	13,175	1,110	3,048	8,630	388
중소벤처기업부	1,633	74	685		874
국가보훈처	44	23	21		
식품의약품안전처	651	610	40		
경찰청	60	14	46		

부처명	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소방청	356	356			
문화재청	5,803	5,318	41		445
농촌진흥청	1,796	916	837	43	
산림청	11,327	4,498	1,203	5,625	
질병관리청	692	692			
행복청	96			96	
새만금개발청	60	60			
공정거래위원회	4	4			

출처: 행정안전부(2021: 8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21년도 국가예산 확정 시 부처별 배분 내역임

□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및 기능

-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공을 위한 노력, 재정자금의 계획·중점적인 투입의 필요, 재해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신규사업의 보급 및 장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원조, 국민편리를 위한 사무위탁 및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로 설명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 공공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함(한국재정정보원, 2018)
 - 첫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공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둘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셋째,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함

□ 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유형

- (국고보조금 일반적 유형) 국고보조금의 유형은 대략 5가지 기준에서 구분함
- 첫째,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지 민간단체인지에 따라 분류함
 - 둘째, 부담방식이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과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으로 구분함(한국재정정보원, 2018)
 - 셋째, 보조율 기준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이 되는 보조율(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률 보조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 수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는 차등보조 방식으로 구분됨(한국재정정보원, 2018)
 - 넷째, 지원 내용으로서 성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함.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급여성 지출이 많은 경상보조의 비중이 높음

〈표 2-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상·자본보조사업(예시)

구분	보조 사업명	
	경상	자본
지방자치단체 이전	기초연금 지급	일반 농산어촌개발
	의료급여 경상보조	하수관로 정비
	생계급여	지방하천 정비(생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생활)
	주거급여 지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지자체)	도시 재생 사업
	아동수당 지급	문화재 보수 정비(총액사업보조)
	장애인 활동 지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구분	보조 사업명	
	경상	자본
민간이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리 시설 개보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농촌용수 개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일반)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구호 지원	수산 자원 조성 사업 지원
	전직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신분당선(웅산-강남)
	PSO(철도 공익 서비스)보상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민자철도 운영 지원	농촌용수 관리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	대규모 농업 기반 시설 치수 능력 확대
	고용 창출 장려금	인천북항
민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18: 40)

- 다섯째, 교부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이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및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s)도 존재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보조금 제도로 확대 및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한국재정정보원, 2018)
- 또한 국고보조금은 재원배분 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후 배분 방식과 공모를 통한 경쟁 선발 후 배분의 형태를 나타냄
-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의 의무성 정도에 따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일반적 유형 분류를 통해 재원배분 방식의 차이, 즉 공모사업을 설명하기엔 그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함. 이에 이재원 외(2021) 연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의무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음
 -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지방재정의 가용재원 배분 및 관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에 상응한 지방비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지방재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다름(이재원 외, 2021)

- 공모사업은 국고지원금으로 분류하였음(표 2-3 참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전국 확산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 조건이 갖춘 지자체에 대해 장려적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사업 유형임. 중앙정부는 정액이나 정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지방비 부담 조건을 수용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의 선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함(이재원 외, 2021)

〈표 2-3〉 지방비 부담의 의무성 정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유형	개념	비고
국고 부담금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무사업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당연의무 지출	법정기준보조율사업, 개별법률 근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고 분담금	공동사무로서 상호간 자율 선택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	실질적 국가표준적 의무분담 (중앙과 지방의 이해 공유)
국고 지원금	지방정부 자체사업에 대한 장려적 지출	실질적인 신청주의 적용사업 (공모과제 등)
국고 위탁금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정부가 자발적 혹은 법적 의무적으로 위탁 대행 (사무위탁)	100% 국고보조 (위탁수수료-행정관리비용 포함)

출처: 이재원 외(2021).

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편성목적 및 연혁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국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선정하고,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근거규정은 있으나 개념 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지자체(속초, 천안 등 37개)는 국가 및 시도에서 주관하는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의 개념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음

- 보조금 지급의 공평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규모, 공모과정을 통한 지자체의 추진의지 확인 및 책임성 확보,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함
 -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15일 이상 접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2011년 10월 26일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이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 주요 내용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2-4〉 국고보조금 시행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1963.12.02	- 보조금 지급 절차 일원화 - 지급된 보조금의 감독과 관리사항 규정
1986.12.31	-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규정
2009.05.01	-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 시 유사 사업 활용 - 부처 책임 행정 체제 구축
2011.10.26	- 보조금 운용 평가 제도 도입 - 보조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선정 -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2016.01.01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집행 실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이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포함되도록 함
2016.04.29	-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 - 보조사업 존속 기간 설정과 연장 여부를 평가 -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2017.01.04	- 보조금 전반을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18: 41) 재구성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사업 지원 및 경쟁을 통한 공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준보조율을 준수토록 하여 연도간 지방비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1:82)
 -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지방비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2-5〉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	구성비	2012	구성비	2013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486,182	100	526,125	100	567,164	100
• 국고보조금	300,883	61.9	320,606	60.9	340,347	60.0
• 지방비부담	185,299	38.1	205,519	39.1	226,817	40.0
구분	2014	구성비	2015	구성비	2016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610,786	100	644,322	100	671,376	100
• 국고보조금	377,463	61.8	414,078	64.0	428,646	63.8
• 지방비부담	233,323	38.2	230,244	36.0	242,730	36.2
구분	2017	구성비	2018	구성비	2019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625,045	100	706,631	100	800,992	100
• 국고보조금	434,869	66.7	472,042	66.8	535,994	66.9
• 지방비부담	217,175	33.3	234,589	33.2	264,998	33.1
구분	2020	구성비	2021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867,050	100	974,594	100		
• 국고보조금	581,492	67.1	666,580	68.4		
• 지방비부담	285,558	32.9	308,014	31.6		

출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참고자료(기준보조율)
- 보조율 책정 방법 개선으로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준보조율의 법령규정사항을 확대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지방비부담기준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부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기준 부담률 규정
 -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차등보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도와 시군구가 상호 협의하여 기준부담률을 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관리운영 제도 보완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점검한 결과를 통합 공개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행 상황 조사 점검
 - 지방재정법 제27조의4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27조의8제2항 신설

출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기금사업이 64개로 가장 많음

〈표 2-6〉 회계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수와 규모

		사업수					비중(2020)		국고 보조율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사업비	국비	
전체	일반회계	35	44	46	60	58	4.4	4.4	53.2
	특별회계	35	50	57	53	49	55.7	56.6	53.9
	균특회계	8	14	16	22	14	26.9	28.9	56.9
	기금	34	54	57	67	64	13.0	10.2	41.6
	전체	112	162	176	202	185	100.0	100.0	53.1

출처: 박병희 외(2020). 부분 인용

제2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검토

1)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 국고보조사업의 법적체계

-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음(표 2-7 참고)

〈표 2-7〉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의 각종 조항과 특성

	법률 조항	비고
지방 자치법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유형구분 없음 - 국가시책과 관련된 경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간접 규정
지방 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세입 재원으로서는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명확한 규정 없음
지방자치 단체통합 재정개요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	-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으로 유형을 구분. 하지만 유형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은 없음

	법률 조항	비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①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재정 '조성' 혹은 '원조' 재원으로 규정 - 보조금과 부담금으로 구분. 세부 분류 기준없음 - 보조사업에 부담하는 지방비를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재원으로 설정 - 국고보조사업 존속기간 3년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사업의 자원안정성 취약한 상태 지속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출처: 박병희 외(2020).

○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중앙 각 부처로부터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자의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p><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27조의2)

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6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공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함
 - 다만, ① 특정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③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음
- 동법 제17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포함됨(동시행령 제35조의5 제1항 제2호)
 - 다만, ①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②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③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서 제외됨(동시행령 제35조의5 제2항 제2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1호)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서는 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음
 -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① 사업추진 기본방향, ② 지원대상사업, ③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④ 지원 및 선정절차, ⑤ 수행 일정, ⑥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해야 함

- 이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지침 제3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주요 점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모에 의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주요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88호)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도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동일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지침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는 공모사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는 보조사업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7조에서는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관련 조례

- 일부 지자체(속초, 천안 등 37개)는 국가 및 시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사업의 개념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제정함

〈표 2-8〉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시(75개)	군(82개)	구(69개)	계(226개)
서울	-	-	-	0
부산	-	-	-	0
대구	-	-	-	0
인천	-	-	중구	1
광주	-	-	서구	1
대전	-	-	-	0
울산	-	-	-	0
세종		-		0
경기	-	-	-	0
강원	속초시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	4
충북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	6
충남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	3
전북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	3
전남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무안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10
경북	구미시, 영주시	-	-	2
경남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7
제주		-		0
계	12(16.0%)	23(28.0%)	2(2.9%)	37(16.4%)

- 공모사업을 위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타당성 검토, 추진 절차의 규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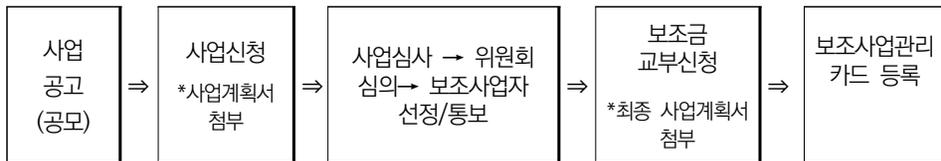
〈표 2-9〉 공모사업 관리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공모사업, 총괄부서, 담당부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제3조(시장의 책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항 규정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 규정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공모사업 추진 관련 사항 규정
제6조(의회 보고)	공모사업 관련 의회 보고 규정
제7조(인센티브)	공모사업 선정 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규정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제9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규정

2. 관리·운영 체계 검토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는 ‘공모와 선정’, ‘집행’, ‘정산평가’로 구분되며, 공모와 선정 단계를 제외한 집행, 정산평가는 기존 국고보조금과 관리체계가 동일함
-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받고,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침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평가 기준으로 규정하였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함(국고보조금 통합지침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 확보 여부를 고려함
-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받은 경우, 또는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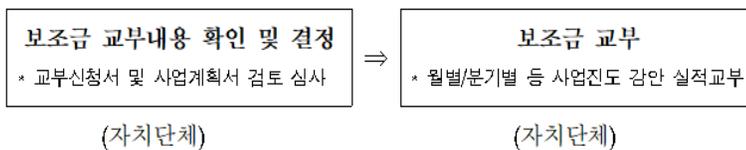
〈표 2-10〉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자 선정 기준(예시)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구분	세부항목								
	계	100							
정량적 평가 (10)	사업실적 건수	5	○ 최근2년간 유사사업 실적 건수(재난 안전 교육 등)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점	5	4	3	2	1	0
	사업실적 금액	5	○ 최근2년간 유사 용역사업 1건의 최대계약금액						
			구분	0.8억 이상	0.8억 미만 ~0.4억 이상	0.4억 미만 ~0.2억 이상	0.2억 미만		
			배점	5	3	1	0		
정성적 평가 (90)	사업수행능력	20	○ 사업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사전준비 및 실행능력 (적정 인력 확보, 재난·안전 전문가 참여 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포함) ○ 교육 운영 계획의 구체성 (장소 확보, 교육과정 등)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구분	세부항목		
	내용의 충실도	15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서 내용 구성의 체계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목표 및 목표달성 방안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방법의 적절성	25	○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실행 가능성 ○ 예산편성 구체성 ○ 사업완료 후 활용 방안 제시

출처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장애인 안전교육 선정평가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공고문

-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함.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됨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업 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 계획, 경비와 사용 등 포함)를 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한 번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 (집행)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운용평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그림 2-3〉 국고보조금 운용 평가 기준(예시)

분야	문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사업성과 (60)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2015: 2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 (연장평가) 국고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일몰제를 실시하는데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고보조사업이 타당하게 편성, 선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함
 - 보조사업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표 2-11〉 보조사업 연장 평가 기준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
1	보조사업 법적 근거의 명확성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	보조사업의 효과성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필요성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	보조사업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3. 중앙정부 정책 동향 검토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적합성 체크리스트(안)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개선 TF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공모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안)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까지 마련된 체크리스트(안)에서는 공모방식 수행여부를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할 계획임
- 1단계는 공모사업 적격성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공모 부적합 사업으로 판단함
 - 1단계 적격성 요건 : ① 법령 등에 공모의 방식이 규정되거나 사업수행자가 특정된 경우, ② 생명·안전 관련 시급성, ③ 전국 단위 보편적·일관적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통해 판단함
 - 1단계 적격성 요건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만 2단계 타당성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2단계는 공모사업 타당성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적합성을 판단함
 - 2단계 타당성 요건 : ④ 부처가 중심이 되어 우선순위 지정이 바람직한 경

우, ⑤ 강화된 투명성·공정성 필요, ⑥ 혁신적 아이디어 선발이나 시범사업 필요, ⑦ 지자체 추진의지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인 등을 통해 판단함

〈표 2-1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적합성 체크리스트(안)

구분	판단 요건
① 법령 등에 공모외방식 규정/대상 특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근거 법령상 사업수행 방식이 공모외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지정된 경우 ·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명·안전 관련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행 등 비상 재난·재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목표달성 등을 위해 즉시 지원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③ 전국 단위 보편적·일관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치안·안전·보편적 복지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보편적이며, 균등한 행정수준 유지를 정책목표로 하는 경우 · 전국 공통적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대다수가 혜택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부처중심 우선순위 지정 바람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데이터·통계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지역 우선순위 선정이 가능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
⑤ 강화된 투명성·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 대비 지자체의 높은 수요로 인해 보다 강화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이해관계가 참여하여 일부 지자체를 선별 지원해야 하는 경우
⑥ 혁신적 아이디어 선발/시범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혁신적 아이디어 반영 필요성이 있고, 공모신청 사업간 실질적 차별성이 존재하여 선별 평가 실익이 많은 경우 · 전국적 확산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⑦ 지자체 추진의지가 사업성공에 중요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경우 · 지역주도형 사업, 주민참여 협업사업 등 지자체가 사업계획 등을 주도하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개선 TF 내부자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주요 점검 사항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개선 TF에서 제시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주요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3〉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주요 점검 사항

구분	세부기준	주요 내용	
계획 수립 단계	1	사업목적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근거법령 등에서 제시한 목적과 실제 사업목적 간 연계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대상 범위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의 충분성
	2	사업수요의 계량화·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요를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 확보 여부
	3	합리적 선정기준의 채택·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및 배점 요소 합리성·명확성 ·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 확인 판단지표 적정성
	4	사업 유사·중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사업목적, 수혜대상 등이 중복되지 않는지의 여부 ※ 다만,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사사업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형평성 제고 ② 기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 제공 · 공모사업의 과도한 세분화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재정중복 투자, 공모사업 남발 및 분절화로 통합적 관리 한계)
	5	사업수행자 매칭 부담비율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업 국고보조율 대비 보조율 적정성 · 기준보조율 대비 차등보조율 적용 여부 · 「보조금법」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보조율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사업수행자 추가 부담 조건 부과 여부 및 내용
	6	지역 격차 발생 우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성과지표 등에 균형발전지표(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 반영 여부 · 한정된 지역에 대한 제한적 공모사업 적용을 통해 지역 격차 심화 방지 가능성
	7	공모추진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진행 시 비용(자원, 인력 등) 대비 기대실익(효과)의 경제성 여부 확인

구분	세부기준	주요 내용
공고·신청·선정 단계	8 사업공고 시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날짜, 공고 기간, 접수 날짜 적정성 지원 및 선정절차 일정 합리성(사업수행자 입장에서 준비·대응에 충분한 기간, 지자체 예산 절차상 편의성 고려 등)
	9 선정 절차의 공정성·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과정 상 이의신청 절차 구비 여부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가장 최근 재난관리평가 결과 확인 및 반영 여부(미흡 지자체 대상 선정절차 에서 일부 페널티 부여)
	10 보조사업자선정 위원회 구성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여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구성 여부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 민간전문가 포함 여부
집행·사후 관리 단계	11 집행과정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선정·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없는지의 여부 응모(공문, 홈페이지) 접근 용이성·개방성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했는지의 여부
	12 성과관리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현황 보조금통합관리망 상 관리 여부 집행률 위주 사업 평가 여부(집행률 외 정량·정성지표 다각적 분석 여부 검토) 성과지표 등에 균형발전지표(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 반영 여부
	13 사후관리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종료 후 점검 절차 마련 여부 사후 사업실적 관리체계 지속가능성 사후 재정지원 설비·투자 자원에 대한 처리·활용방안 마련 여부

자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개선 TF 내부자료.

제3절 주요 국가의 사례

1. 미국

□ 연방정부 보조금 제도¹⁾

-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과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포괄보조금은 하위정부의 일반재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조금 사용에 있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하위정부의 자유재량을 폭넓게 인정함
 - 특정보조금은 특정 공식(인구, 면적, 1인당 소득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특정 공식 보조금(formular categorical grants)과 연방정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 하위정부의 신청에 의해 배분되는 특정 사업 보조금(project categorical grants)으로 구성됨
- 이 중 특정 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제도이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자유재량이 큰 보조금임
 - 특정 사업 보조금은 모든 보조금 유형 중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가 가장 좁은 보조금임
 - 또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

□ 특정 보조금 사례: 연방 보조 고속도로 프로그램(Federal-aid Highway)

- 연방보조고속도로 프로그램은 국가 주요 고속도로(교량 포함)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주정부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 관리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 조달청. (2002). '미국 국고보조금 사업의 관리' 내용을 정리함

- FHWA)이 관리하며, 수십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의 자금은 고속도로 기금(Highway Trust Fund)을 통해 제공되며, 연료, 타이어, 트럭 등에 부과되는 사용자 수수료(user fee)로 운영됨
-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The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TEA-21) 등 법률에 근거하며, 이들 법률은 다년도 지출총액을 정해놓고 있음(조달청, 2008)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총비용의 80%를 부담함
 - 나머지는 주/지방정부 자금, 민간 기부금, 법령에 의한 다른 연방기관 지원 자금 등 소위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통해 지원함
 - 총 지원금 중 약 85~90%가 특정 공식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10~15%는 특정 사업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됨
- 연방 보조 고속도로 프로그램 중 특정 사업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음(조달청, 2008)
-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공개적인 보조금 신청 공고를 하여 심사 결과 적격인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자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0여개가 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음(사업대상 및 지원규모가 법률로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지원대상 사업은 프로젝트 내용, 목적, 스케줄 및 비용, 사업별 가용 예산, 신청 사업계획의 총금액, 주정부의 프로젝트 우선순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며 결정하고, 가능한 주정부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함
 - FHWA는 주정부의 신청서에 포함된 프로젝트 추정 비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데, 주로 요청금액과 관련된 프로젝트 내용이 법률이 규정한 프로그램의 목적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며, 일부 신청금액을 조정함
 - 특정 사업 보조금 방식을 집행되는 프로그램에는 High Priority Projects Program, National Corridor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gram, Indian Reservation Roads 등이 있음

□ 주정부 보조금 제도

- 주정부 보조금은 주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에 주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의미함
 - 주정부 보조금 중 수혜자가 정부 단위 (카운티 정부, 시 정부, 교육구 등)인 경우 정부 간 이전재원으로 파악함
 - 주정부 보조금은 대부분 개별 사업부서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공통적인 운영 지침이 있지는 않음
 - 주정부 보조금은 주로 교통, 주택, 환경 분야에서 수행됨
- 공모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특정 사업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하위정부)는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정부 공모사업 운영방식

-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기한, 지급 가능범위, 지급대상, 지급방법, 감독방식 등을 포함하는 운영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시작됨

〈표 2-14〉 콜로라도주 보조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심사 중점 사항

10 Tips	고려 사항
조직 설립배경 (Organization Background)	조직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직설립 시기, 설립자, 설립방식 및 조직변천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조직 목표 (Organization's current goals)	조직 설립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재 조직 목표
현재 운영 사업 (Current programs)	조직의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제안 사업 (Program or Project request only)	보조 사업에 지원하게 된 취지 또는 보조 사업을 제안하게 된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10 Tips	고려 사항
사업 평가 방식 (Evaluation)	전반적 조직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 지원 또는 제안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
사업 운영 시 협력방안 (Collaboration)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상호작용
사업 운영수단 획득방안 (Inclusiveness)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자원인 인력, 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의 획득방안
조직관리 방식 (Board / Governance)	관리자의 조직 관리방식 및 사업관리 위원회 실적 등을 포함한 조직운영 효율성
자원봉사자 획득 (Volunteers)	자원봉사자 획득 방안
조직 발전 기획안 (Planning)	향후 3~5년 간 조직 발전과 관련한 기획안

출처: Colorado Common Grant Application User's Guide, CO, 이삼주-윤태섭(2016) 재인용

- 보조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하고, 이러한 고시에 따라 보조사업자 (하위정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함
 - 신청하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 주정부 차원에서 신청자 작성 요령 및 검토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특정 사업 보조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하위정부는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는 성과평가지표,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민 수, 보조금 삭감 유무, 달성되지 않은 목표, 행정상 변동, 경비 지출내역, 주목할 만한 성과 등을 포함함
- 특정 사업 보조금에 대한 성과감사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OMB가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실시되며, 각 사업별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OMB의 10 common grant audit issues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한 도구였으나, 주정부 단위에서의 보조사업자 관리 지침 작성에도 준용되고 있음

〈표 2-15〉 보조사업 성과감사 지표(조지아주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서비스 영역	성과평가지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 부양자와 거주하는 비율, 요양원에 거주하는 비율 ·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교통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 ·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ADL을 경험하는 비율
노숙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자 수 ·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경험이 있는 사람 및 가구원 수 ·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야 했던 아동수 · 빈곤인구 ·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 인구 · 저당 채무자 수 · 강제 퇴출 개인 및 가구원 수
청소년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수 · 0~17세 사이 아동 중 성장발달 저해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 · 5~12세 사이 아동 중 방과 후 보호자 및 도우미에 의해 돌봄을 받지 않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 · 고등학교 졸업 비율 · 고등학교 자퇴 비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I 수급자 수 · 특수교육을 받고 있거나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 수 · 일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수 · 성인 장애인의 취업률 · 성인 장애인 중 생계유지 가능 소득을 얻는 비율 · 빈곤선 아래에 있는 장애인 수
HIV/A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발견자 비율 · 보유자 수 · 감염자 중 안전하고 안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는 비율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 실업급여 수급률 ·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도 아니고 취업 상태도 아닌 청년 비율

출처: Human service grants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A.

- 공모사업(보조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부처별로 발행하는 booklet 또는 handbook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 booklet에는 보조금 명칭, 관련 법령, 지급대상, 지급절차 및 우선순위, 보조금 재원 및 매칭비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포함됨
 - 세부 공모사업(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별도의 guideline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

□ 주정부 공모사업 운영 사례: 플로리다 역사지구 보존 보조금 사업

- 사업개요 및 목적
 - 플로리다 역사지구 보존 보조금 사업은 플로리다 주 국무부 역사자원부 (Division of Historical Resources)에서 역사 보존을 위한 주 및 연방 기금을 제공하는 공모사업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요한 역사적 및 고고학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지역, 지역 및 주 전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임(단, 역사 보존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방식
 - 신청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진행
 - 주 정부는 프로그램에 매년 할당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모든 적격 신청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음
- 사업수행 절차
 - 3월: 역사자원부 웹페이지를 통한 사업의 공지
 - 4월 1일~ 6월 1일: 지원서 접수(국무부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접수)
 - 6월 1일: 지원서 마감
 - 6월 ~ 9월: 지원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9월 ~ 9월 30일: 선정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약서 작성
 - 10월 31일 ~ 다음해 4월 30일: 총 7차례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 다음해 7월 31일: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

- 역사지구 보존 보조금 사업의 운영 주체는 플로리다 주 국무부 산하 역사 지원부임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방정부(카운티, 시 정부, 교육구 포함), 대학, 공공 기관 등임
- 비영리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 플로리다주 내에서 비영리 역사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사업비 부담 비율

- 플로리다 역사지구 보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수행자의 매칭을 요구하며, 매칭비율은 지원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함
- REDI(Ru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내에 위치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매칭비율은 25%임
- REDI가 아닌 곳에 위치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매칭비율은 50%임
- 공공기관, 대학이 신청하는 경우의 매칭비율은 50%임

○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및 기준

-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심사는 부서심사와 위원회심사로 이루어짐
- 부서심사는 기술평가 위주로 진행되며 주로 지원자격 적격 여부, 제출 서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진행
- 위원회심사는 플로리다 역사위원회(Florida historical commission)에서 진행하며, 위원회 심사의 기준은 3가지 분야(사업계획서, 조직역량, 기대성과)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사용함
- 위원회 심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표 2-16〉 플로리다 역사위원회 심사 기준 및 배점

기준		배점
사업계획서	사업의 역사적 중요성	10
	사업의 필요성	10
	사업 범위, 예산 및 일정의 적절성	10
조직역량	조직의 직원, 시설 및 조직자원, 이전 사업 경험	10
	재정적 여력(매칭부담 능력)	10
	전문성 및 기술력	10
공공성	주 정부 역사보존사업과의 연계성	10
	사업의 교육적 잠재력 또는 가치	10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10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10
총점		100

□ 주정부 공모사업 운영 사례: 문화시설 보조사업

○ 사업개요 및 목적

- 문화시설 보조사업은 문화사업을 임무로 하는 조직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는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야 함
-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문화시설의 신축, 인수,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문화시설은 예술 및 문화 분야의 제작, 전시 등이 수행되는 건물을 의미함

○ 사업방식

- 신청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진행
- 주 정부는 프로그램에 매년 할당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모든 적격 신청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음

○ 사업수행 절차

- 4월: 웹페이지를 통한 사업의 공지
- 4월 ~ 6월: 지원서 접수(국무부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접수)
- 6월 1일: 지원서 마감
- 6월 ~ 7월: 지원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다음해 1월 31일: 1차 중간결과 보고
- 다음해 7월 31일: 2차 중간결과 보고
- 다다음해 1월 31일: 3차 중간결과 보고
- 다다음해 7월 1일: 사업 종료 및 최종결과 보고

○ 사업대상

- 문화시설 보조사업의 운영 주체는 플로리다주 국무부 산하 문화예술부임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방정부(카운티, 시 정부, 교육구 포함), 대학, 공공 기관, 비영리 기관 등임
- 음악, 무용, 연극, 문예창작, 문학, 건축, 회화, 조각, 민속 예술, 사진, 공예, 미디어 예술, 시각 예술 및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시설 사용의 85% 이상을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차지해야 함
- 문화시설 건설, 개조 또는 인수(세 가지 조합이 아님)를 위해 지원함(단, 주차 시설, 인도, 보도 및 산책로 조성·조경은 제외)

○ 사업비 부담 비율

- 문화시설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수행자의 매칭을 요구하며, 매칭비율은 지원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함
- 예산규모가 10만달러 이하인 보조사업자의 매칭비율은 1:1임
- 예산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이지만 REDI 내에 위치한 보조사업자의 매칭비율은 1:1임
- 예산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이고 REDI 내에 위치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의 매칭비율은 2:1임

○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및 기준

-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심사는 부서심사와 위원회심사로 이루어짐
- 부서심사는 기술평가 위주로 진행되며 주로 지원자격 적격 여부, 제출 서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진행
- 위원회심사는 플로리다 문화예술검토위원회(Florida council on arts and cultural review panel)에서 진행하며, 위원회 심사의 기준은 3가지 분야(사업 분야, 예산 및 매칭, 기대성과)에 대한 6가지 기준을 사용함
- 위원회 심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표 2-17〉 플로리다 문화예술검토위원회 심사 기준 및 배점

기준		배점
사업 분야	사업 분야 및 영역(사업계획서)	30
예산 및 매칭	예산 내역: 지출	30
	예산 내역: 수입	
	매칭 계획	
	사업수행 조직	
기대성과	기대성과, 예측되는 영향	40
합계		100

2. 일본

□ 일본의 국고지출금제도

○ 일본은 국고보조금을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국고보조금은 특정한 지출에 관련하여 용도를 한정하여 교부하는 특정보조금과 특정한 지출과 관계없이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보조금으로 구분함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조정제도로써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일반보조금임. 이와 달리 용도를 제한한 보조금이라도 같은 분야로 그룹화되어 교부되는 보조금을 포괄보조금(block grant)라고 지칭하고 있음
- 일본에서 일정한 목적과 조건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지출에 특정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고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출되는 재원을 국고지출금이라 지칭함
 - 중앙정부의 예산에는 보조금, 부담금, 이자보급금, 손실보상금, 위탁비, 조성금 등의 명칭으로 계상됨
- 일본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방재정이라는 시점에서 단서조항으로 「국고부담금」, 「국고위탁금」, 「국고보조금」이라는 3종류의 국고지출금을 인정하고 있음
 - 첫째, 국고부담금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비부담을 구분한다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국고지출금임
 - 둘째, 국고위탁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경비 중, 온전히 국가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무(국정선거 비용, 국가의 통계조사비, 외국인등록사무비 등)에 드는 지출에 교부되는 국고지출금임
 - 셋째,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의 행정상의 필요로,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을 의미함. 국고보조금 중, 정책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장려적 보조금이라 하며(공모형 국고보조사업), 특정한 경비에 대해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재정지원적 보조금이라고 함
- <표 2-18>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도 국고지출금 결산액을 보면, 국고지출금 총액은 15조 5,204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1.1%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국고지출금 교부액으로 1조엔을 넘는 국고지출금으로는 7가지가 있음.

그중 가장 큰 국고지출금은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의 생활보호비에 대해 중앙정부가 3/4를 부담하는 생활보호비 부담금임

- 생활보호비 부담금은 생활보호의 급증을 반영하여 2조 8070억엔으로 가장 큰 비율(국고지출금 총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큰 것은, 투자적 경비에 대한 보조금인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과 사회자본 정비 종합교부금임.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은 이른바 블록 보조금으로 일정한 메뉴에서 대상 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은 의무교육 교직원의 급여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정촌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정령지정도시 이외에는 도도부현에 교부함
- 사회보장관계에서는 이전부터 금액이 컸던 아동수당 등 교부금에 더하여, 아동육아 신지원제도의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 외에, 근년에 급속히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이 있음
- 도도부현에서는 의무교육비 부담금과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사회자본 정비 종합교부금이 많고, 시정촌에서는 생활보호비 부담금과 아동수당 등 교부금,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여기에서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사무분담에 따라 국고지출금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2-18〉 2017년도 국고지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순계액			비교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액				증감액	전년도 증감률	
				2016년도 순계액	증감액	증감률			
의무교육비 부담금	1,263,075	20.8	1,263,075	8.1	1,526,626	9.7	-263,551	-17.3	0.0
생활보호비 부담금	140,408	2.3	2,666,669	28.2	2,817,074	18.0	-9,997	0.4	0.1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	105,257	1.7	916,521	9.7	884,384	5.6	137,394	15.5	13.3
장애인 자립지원 금부비 등 부담금	77,497	1.3	1,187,480	12.6	1,195,894	7.6	69,083	5.8	5.8
사립고등학교 등 강상비 조성비 보조금	105,577	1.7	-	-	98,417	0.6	7,160	7.3	-8.4
아동수당 등 교부금	-	-	1,360,477	14.4	1,376,011	8.8	-15,534	-1.1	-1.5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미징수 교부금	12	0.0	9	0.0	494	0.0	-473	-95.7	-99.4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교부금	328,549	5.4	-	-	329,256	2.1	-707	-0.2	22.0
보통간선사업비 지출금	1,126,487	18.5	632,481	6.7	1,564,612	10.0	194,356	12.4	-0.7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417,136	6.9	108,694	1.2	449,789	3.2	26,040	5.2	5.3
실업대책사업비 지출금	-	-	3	0.0	17	0.0	-14	-82.4	240.0
위탁금	124,453	2.0	94,993	1.0	219,447	1.4	-6,045	-2.7	-2.6
보통간선사업	4,316	0.1	7,265	0.1	11,581	0.1	-276	-2.3	10.0
재해복구사업	32	0.0	1,161	0.0	1,193	0.0	-834	-41.1	-22.8
그 외	120,105	1.9	86,567	0.9	206,673	1.3	-4,935	-2.3	-3.0
재정보급금	3,851	0.1	3,691	0.0	7,542	0.0	511	7.3	0.2
국유재산시설 등 소재시정촌 조성교부금	30	0.0	35,510	0.4	35,540	0.2	-	-	2.9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31,962	0.5	23,382	0.2	55,344	0.4	-2,667	-4.6	-4.8
잔원임지 지역대책 교부금	94,421	1.6	30,887	0.3	125,308	0.8	734	0.6	-8.9
특정방위시설 주변정비 조성교부금	-	-	20,742	0.2	20,742	0.1	34	0.2	2.5
선유 저장시설 입지대책 등 교부금	5,318	0.1	-	-	5,318	0.0	12	0.2	2.5
사회사본정비 종합교부금	952,189	15.7	751,400	8.0	1,703,589	11.0	23,000	1.4	6.1
지방행정관계 교부금	45,000	0.7	63,116	0.7	108,117	0.7	-3,427	-3.1	-
동일본지진 부흥교부금	13,658	0.2	95,234	1.0	108,892	0.7	-54,764	-33.5	-46.4
그 외	1,240,930	20.5	1,453,258	15.4	2,694,187	17.4	-267,937	-9.0	21.5
합계	6,075,810	100.0	9,444,547	100.0	15,520,357	100.0	-166,792	-1.1	2.7

출처: 총무성 '지방재정백서(2019년도판)'

□ 일본의 국고지출금제도 현황 및 교부·운영

- 지방재정계획 상 국고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에 보조사업비(투자적 경비와 일반행정비 각각)가 계상되고 있음
 - <표 2-19>에서는 2020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후생노동성 소관의 보조사업비(일반행정경비)를 나타내며,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부담액과 지방부담액로 구분하여 계상함
 - 국고부담금인 생활보호비에 대한 생활부조비 등 부담금과 의료부조비 등 부담금, 간호부조비 등 부담금에 대한 국고부담액은 합계 2조 8621억 엔, 지방부담액은 9539억엔으로 그 비율이 3:1임
 - 이는 보조율이 3/4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국고보조부담액과 지방부담액의 관계는 개별 국고지출금에 관한 보조율로 규정되어 있음

<표 2-19> 2020년도 지방재정계획의 보조사업비(일반행정경비)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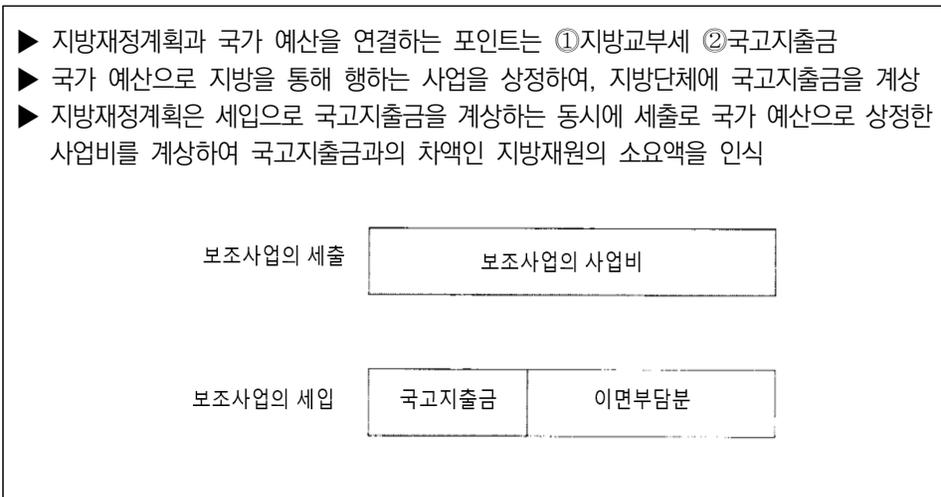
(단위: 억엔)

구분 (후생노동성소관)	국고보조부담액	지방부담액	합계
보건사업비 등 보조금	36,956	32,540	69,496
결핵의료비 부담금	3,436	1,381	4,817
정신보건비 등 부담금	7,644	3,596	11,240
생활부조비 등 부담금	1,329,794	443,184	1,772,978
의료부조비 등 부담금	1,454,916	484,972	1,939,888
간호부조비 등 부담금	77,361	25,787	103,148
신체장애자 보호비 등 부담금	2,195	2,195	4,390
장애자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	1,512,407	1,512,407	3,024,814
후기 고령자 의료급부비 등 부담금	6,426	2,726,334	2,732,760
간호급부비 등 부담금	-	3,137,929	3,137,929
재택복지사업비 보조금	2,672	4,835	7,507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	136,060	136,060	272,120
아동부양수당 급부비 부담금	159,870	319,740	479,610
보험기반안정 등 부담금	134,958	223,141	358,099
직업전환훈련비 부담금	1,176	1,176	2,352
그 외	1,162,795	1,011,169	2,173,964
후생노동성 합계	6,028,666	10,066,446	16,095,112

출처: 총무성 『레이와2년(2020)년도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사업비와 국고지출금과의 차액은 이면부담으로 필요한 일반재원액이 확보됨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국고부담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2에서 이면부담에 상응하는 일반재원의 소요액의 적어도 일부분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입함으로써 개별 단체에 대한 재원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재정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고부담금 사업을 집행할 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그림 8-1에 나타남

〈그림 2-4〉 국가 예산과의 정합성



- 〈표 2-19〉에서는 간호급부비 등 부담금에 대한 국고부담액은 0으로, 지방부담액만이 계상되나 이것이 국고부담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통회계로 대응하기 때문에 간호보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일반회계에서 이월만 행해짐

- 이에 중앙정부에서의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월금 부분만 계상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고지출금은 보조금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1955년에 제정된 보조금 적정화법(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됨
- 국고지출금의 보조절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수도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 <표 2-20>는 하수도 사업에 관한 교부신청서류 임. 이를 통해 공사 내용, 용지의 확보 등을 나타내는 서류가 요구됨

<표 2-20> 하수도사업에 관한 보조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람

신청서류명	부수	A	B	C	비고
표지(지사 앞으로)	1	○	-	-	※건설사무소 경유
교부금교부신청서(참고양식 제1)	3	○	○	○	※국토교통대신 앞
교부신청액 일람표 (참고양식 제1의 별첨1)	3	○	○	○	
교부금조서(참고양식제1의 별첨2)	3	○	○	○	정비계획서의 확인
도면	3	○	○	○	
사무비 재원표(참고양식 제10)	3	○	○	○	일반재원·지방채만으로는 불필요
수명연장화 계획서(양식2)	3	○	○	○	교부대상의 확인(개축·갱신공종)
공사설계서	-	○	-	-	
본공사비 내역표	1	○	-	-	
부대공사비 내역표	1	○	-	-	
측량 및 실험비 내역표	1	○	-	-	
용지비 및 보상비 내역표	1	○	-	-	
용지 및 보상비 심사표	1	○	-	-	※양식참조
보조사업 개별 조사서	2	○	○	-	※공공·특한 ²⁾ 으로 나눔
교부신청 내역서	2	○	○	-	※공공 특한으로 나눔
계획규모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서	2	○	○	-	
코스트 구조개혁 체크리스트	1	○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 절차가 개시됨. 신청내용의 심사와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조사도 행해져 교부가 결정되며, 교부결정시에는 경비의 배분 변경, 계약방법 등 경비 집행에 관한 변경 등에 대한 조건이 정해지기도 함
- 교부가 결정되고 보조사업이 집행되는데,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신청 내용과 다른 용도 변경이 없도록 감독하고 있음. 또한 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 상황을 보고해야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실적 보고를 실시하고 있음
- 교부된 보조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실적보고를 받고 보조신청에 따라 집행되었음이 확인된 후에 이뤄짐. 보조신청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전혀 다른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짐. 국고지출금에 대해서는 국가 회계조사 대상이 되므로, 보조금 취지와 다른 집행이 행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이 요구됨
- 국고지출금의 집행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의 각 부서에서 보조요강을 책정하며, 보조요강에는 집행 규칙이 세세하게 정해져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사례 : 농림수산성(쌀 가공품 수출 대책)

- 일본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선별하여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농림수산성의 「2021년 쌀 가공품 수출 추진 긴급 대책 사업 공모」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2025년까지 2조엔, 2030년까지 5조엔이라는 수출액 목표 달성을 위해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일본 EU 경제 연계 협정, 미·일 무역 협정, 일영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 및 지역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의 발효 등에 의한

2) 공공하수도 중, 주로 시가지화 구역 이외에 설치되는 하수도로 자연공원 구역 내의 수질 보호를 위해, 혹은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처리대상인구가 만명 이하의 수규모 하수도를 특정환경보전 공공 하수도, 특환이라 부른다.

관세 철폐·삭감 등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지역에서 쌀·쌀 가공품의 수요 개척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사업 실시 주체의 적격성, 사업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사업의 효과, 행정 시책등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실시함
 -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은 (1) 사업 실시 주체의 적격성, (2) 사업 내용 및 방법, (3) 사업의 효과, (4) 행정 시책과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1) 사업 실시 주체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실시 체제의 적격성② 지건, 전문성 및 유사·관련 사업의 실적 등
(2) 사업 내용 및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업의 목적, 취지와와의 일관성 및 사업 내용의 타당성② 실시 방법의 효율성③ 경비배분의 적정성
(3) 사업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기대되는 효과② 파급효과
(4) 행정 시책과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구체적인 수출액 또는 양의 수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② 사업내용 및 목표가 수출확대실행전략과 정합된 성과목표,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 것③ 전국 규모의 체제로 영향력이 높은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사업 계획이 되고 있는 것(구성원 등의 수출액이 일본의 수출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산지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사람 중 대체로 구성원등이 되어 있는 등)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사례 : 문부과학성(후다케 성과 창출 가속 프로그램)

- 문부과학성 2020년도 「‘후다케’ 성과 창출 가속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처리나 해석 등 데이터 시뮬레이션에 관측 데이터를 캡처하는 방안 개발 사업임

-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은 세계적으로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감염 확대에 수반된, 연구개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하, 「DX」라고 한다)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을 반영한 사업임

○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1) 심사의 관점 : 사회적·국가적 견지로부터 높은 의의가 있는가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감염증 대책, 연구 개발의 DX(AI, 데이터 사이언스의 활용 등을 포함), 위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 구축에의 공헌을 평가하는 지표
- (2) 심사의 관점 :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초대규모 병렬 계산, 방대한 조합이나 다양한 복잡한 조건하에서의 시뮬레이션, 대량 데이터 처리 지표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평가하는 지표
 -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과학의 융합을 평가하는 지표
 -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계산을 평가하는 지표(계산규모, 동시 실행 계산 건수 등)
 - 계산 과학 ·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
 - 본 사업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 해석 결과의 공개나 공유 등에 의한 성과의 하방 전개·가로 전개를 평가하는 지표
- (3) 심사의 관점 : 홍보 보급·아웃리치·사회 실장·인재 육성
 - 성과의 사회에의 환원, 사회 실장에 의한 공헌을 평가하는 지표
 - 홍보 보급·아웃리치·사회 구현을 평가하는 지표
 - 계산 과학 분야의 여성·젊은 연구자의 육성 등의 인재 육성, 분야 진흥을 평가하는 지표

제3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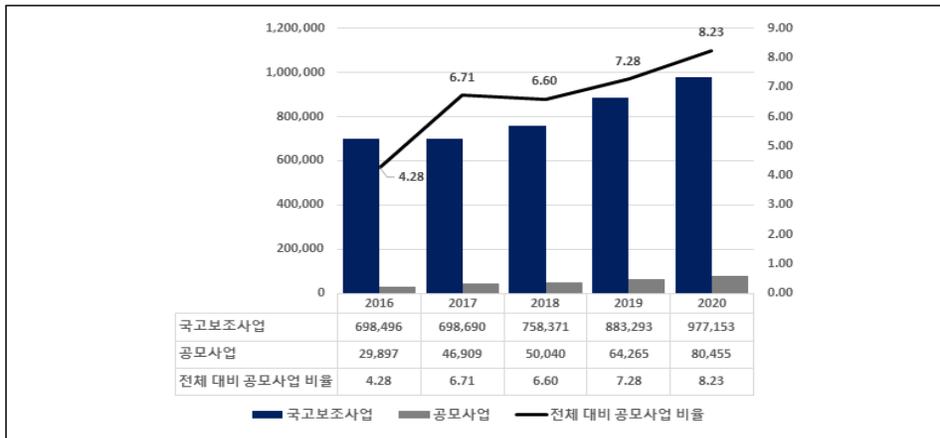
- 제1절 일반현황 분석
- 제2절 언론 동향 분석
- 제3절 수행실태 분석
- 제4절 운영단계별 문제점 분석

제1절 일반현황 분석

- 일반현황 분석을 위해 박병희 외(2020)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의 5개년도 추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부족함.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는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뿐만 아니라 회계별 구분, 분포율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토대로 요약하여 기초현황으로 제시하고자 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적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그림 3-1)

〈그림 3-1〉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단위: 억원, %)



- 3) 본 연구의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및 내부 지방재정학회 학술용역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제3절의 행정안전부 내부 데이터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공모 사업 건수의 경우 단위사업만 계상했을 경우, 세부사업을 포함했을 경우, 계속 사업 제외 여부 등 기준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함

- 2020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977,153억원이며 이 중 80,455억원, 8.23%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되고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기능별 규모

- 최근 5년 동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숫자와 규모, 그리고 전체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함(박병희 외, 2020)
 - 공모사업의 경우, 2016년도 112개(총사업비 3.0조원)에서 2020년 185개(총사업비 8.0조원)로 73개 증가함
 - 사업 수 기준, 전체 국고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의 비중은 2016년 13.3%에서 2020년 17.9%까지 증가하였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016년 4.3%에서 2020년 8.2%로 증가함
- 공모형 사업에서는 소규모 예산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당 평균 총사업비는 2020년 기준 434.9억원, 국고보조율은 53.1%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율이 67.1%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재정기능별로 공모형사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사업수에서는 농림수산부문의 사업이 가장 많은 69개이고 총사업비는 3.0조원임. 농림수산부문의 공모형 사업은 2016년 46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99개까지 급증했음
 - 문화관광부문의 공모형 보조사업도 46개로 많은 편임(2020년 기준). 총사업비는 98억원으로 사업당 예산규모가 2.1억원에 불과함.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부문 공모사업은 11개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2.2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사업당 예산규모가 큰 편임

〈표 3-1〉 최근 5년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기능별 분포

(단위: 개, 억원, %)

(억원,%)	공모사업													전체 국고보조사업 (B)	(A/B)	사업당 평균 사업비 (억원)
	일반 지방 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도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합계 (A)				
사업수	2016	4		31	6	6	10	46	2	4	2	1	112	839	13.3	266.9
	2017	4	1	41	11	9	10	68	5	6	6	1	162	960	16.9	184.6
	2018	7	1	45	10	11	10	75	5	4	7	1	176	990	17.8	284.3
	2019	7	1	48	11	19	12	77	8	7	11	1	202	1,062	19.0	318.1
	2020	5	1	46	11	17	11	69	6	7	11	1	185	1,033	17.9	434.9
2016	총사업비	1,043		541	4,788	44	1,534	19,302	802	1,254	477	113	29,897	698,496	4.3	
	국비	561		296	2,148	33	883	8,657	337	574	191	56	13,736	460,700	3.0	
	국고보조율	53.8		54.7	44.9	74.2	57.6	44.9	42.0	45.7	40.1	50.0	45.9	66.0		
2017	총사업비	1,367	72	79	7,851	21	1,554	26,851	2,540	1,728	4,738	108	46,909	698,690	6.7	
	국비	1,156	42	32	3,498	15	891	12,110	1,232	819	2,658	54	22,509	464,318	4.8	
	국고보조율	84.6	58.7	41.0	44.6	74.2	57.4	45.1	48.5	47.4	56.1	50.0	48.0	66.5		
2018	총사업비	573	23	62	7,677	17	1,660	24,966	2,214	1,679	11,063	107	50,040	758,371	6.6	
	국비	305	11	32	3,657	14	918	11,004	1,311	793	5,834	54	23,932	501,728	4.8	
	국고보조율	53.2	50.0	51.2	47.6	83.6	55.3	44.1	59.2	47.2	52.7	50.0	47.8	66.2		
2019	총사업비	370	23	90	9,199	66	2,130	31,473	2,946	2,875	14,986	106	64,265	883,293	7.3	
	국비	211	11	46	4,464	36	1,228	15,180	1,688	1,387	8,299	53	32,604	588,397	5.5	
	국고보조율	56.9	50.0	51.5	48.5	55.3	57.7	48.2	57.3	48.2	55.4	50.0	50.7	66.6		
2020	총사업비	137	22	98	22,322	87	2,708	29,919	710	6,832	17,518	102	80,455	977,153	8.2	
	국비	88	11	53	11,963	48	1,521	15,110	355	3,524	9,973	51	42,696	655,956	6.5	
	국고보조율	64.5	50.0	53.9	53.6	54.6	56.2	50.5	49.9	51.6	56.9	50.0	53.1	67.1		

출처: 박병희 외(2020: 49).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회계별 규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회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기금사업이 64개로 가장 많고, 일반회계 58개, 특별회계 49개, 균특회계 14개 등의 순임

- 일반회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507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비중은

- 4.4%이며, 소규모 영세 사업이 많은 편임. 기금회계도 총사업비 비중이 13%로서 소규모 사업이 많은 편인데, 국고보조율이 41.6%로 낮음
- 소규모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는 기금사업에서 지자체들간 국비유치 경쟁이 심화되면 지방재정의 부담과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쟁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농림수산부문의 공모형사업들은 농특회계 등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전체 69개 사업 가운데 39개 사업이 특별회계 사업이고, 일반회계 사업은 6개에 불과함

〈표 3-2〉 회계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수 분포

(단위: 개, 백만원, %)

		사업수					재정규모(2020)		비중(2020)		국고보조율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사업비	국비	총사업비	국비	
문화관광	일반회계	12	14	16	18	19	2,306	1,054	0.0	0.0	45.7
	기금	19	27	29	30	27	7,504	4,232	0.1	0.1	56.4
	전체	31	41	45	48	46	9,810	5,286	0.1	0.1	53.9
농림수산	일반회계	7	8	7	6	6	52,659	30,214	0.7	0.7	57.4
	특별회계	25	40	46	43	39	1,979,622	1,102,740	24.6	25.8	55.7
	균특회계	4	6	6	9	4	230,892	143,710	2.9	3.4	62.2
	기금	10	14	16	19	20	728,678	234,322	9.1	5.5	32.2
	전체	46	68	75	77	69	2,991,850	1,510,986	37.2	35.4	50.5
전체	일반회계	35	44	46	60	58	350,724	186,630	4.4	4.4	53.2
	특별회계	35	50	57	53	49	4,481,505	2,414,812	55.7	56.6	53.9
	균특회계	8	14	16	22	14	2,168,128	1,233,704	26.9	28.9	56.9
	기금	34	54	57	67	64	1,045,102	434,463	13.0	10.2	41.6
	전체	112	162	176	202	185	8,045,459	4,269,610	100.0	100.0	53.1

출처: 박병희 외(2020: 50).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분포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분포는 공모형 사업은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신청하고, 지방의 현장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야 하는 기초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보조율이 50%대에 있는 사업이 89개로 가장 많으며 문화관광과 농림수산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70% 이상의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32개 뿐임
 - 40% 미만의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은 27개로, 문화관광부와 농림수산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함.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공모형 사업은 13개로, 그중 5개가 환경부문 사업이었음
 - 공모형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최근 5년 동안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연도별로는 불규칙적인 편임. 사회복지부문의 보조율에서 변화가 특히 크며 점차 낮아졌고, 환경부문과 농림수산부문의 보조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문화관광부문은 불규칙성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으로 나타났음

〈표 3-3〉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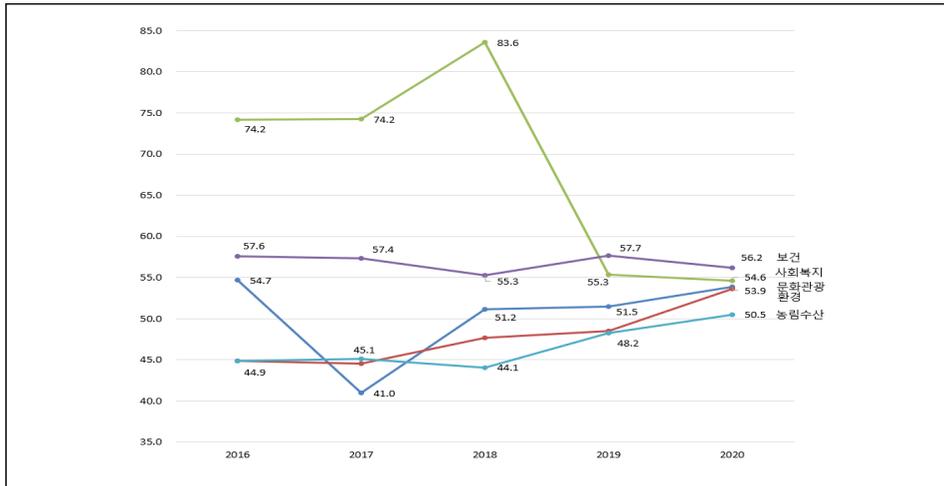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보조율구간									전체	
		20%미만	20%이상	30%이상	40%이상	50%이상	60%이상	70%이상	80%이상	90%이상		100%
기능	일반·지방행정	-	-	-	-	4	-	-	-	-	1	5
	교육	-	-	-	-	1	-	-	-	-	-	1
	문화관광	-	2	1	6	30	2	3	-	-	2	46
	환경	-	-	1	-	5	-	-	-	-	5	11
	사회복지	-	-	-	2	10	1	2	2	-	-	17
	보건	-	-	1	-	7	1	1	-	-	1	11
	농림수산	1	4	16	15	19	3	5	1	2	3	6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	-	2	1	1	1	1	-	-	6
	교통및물류	-	-	1	2	3	-	1	-	-	-	7
	국토및지역개발	-	-	-	-	8	2	-	-	-	1	11
	과학기술	-	-	-	-	1	-	-	-	-	-	1
	전체	1	6	20	27	89	10	13	4	2	13	185
규모	총사업비	29,493	169,664	1,174,661	461,965	4,880,859	296,190	862,036	72,024	7,296	91,272	8,045,459
	국비	4,200	42,137	404,758	211,014	2,648,977	193,719	608,833	57,919	6,781	91,272	4,269,610
비중	총사업비	0.4	2.1	14.6	5.7	60.7	3.7	10.7	0.9	0.1	1.1	100.0
	국비	0.1	1.0	9.5	4.9	62.0	4.5	14.3	1.4	0.2	2.1	100.0

출처: 박병희 외(2020: 51).

〈그림 3-2〉 최근 5년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추이

(단위: %)



- 지금까지 수집된 연구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2016-2020년까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음
 -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본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성과로 인식되는 것을 기반으로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함
 - 또한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기초로 2018-2019년도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실태를 심화하여 분석을 진행함
 - 마지막으로 공모 선정 - 집행 - 평가 등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적 운영 단계를 기초로, 해당 사업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한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제2절 언론 동향 분석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선정은 전문가의 자문,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대부분 지방정부의 성과로 인식되었음
 - 특히 지역 언론을 통해 지방정부의 성과로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홍보하거나 혹은 선정 실패,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등에 관한 여론이 조성되기도 함
- 이에 지역 신문사를 중심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인식, 홍보행태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언론 분석을 실시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어떠한 성격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혹은 언론에 노출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종합하면, 본 분석의 목적은 첫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언론 홍보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된 데이터 구축, 둘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파악 및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현행 공모사업 운영방식 방향 설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정치인과 관료의 입장에서 공모사업 유치에 자신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예산확보의 수단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인식됨.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공포가 공식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면 예산확보와 공공서비스 제공 기회를 내세워 대부분 언론 홍보를 실시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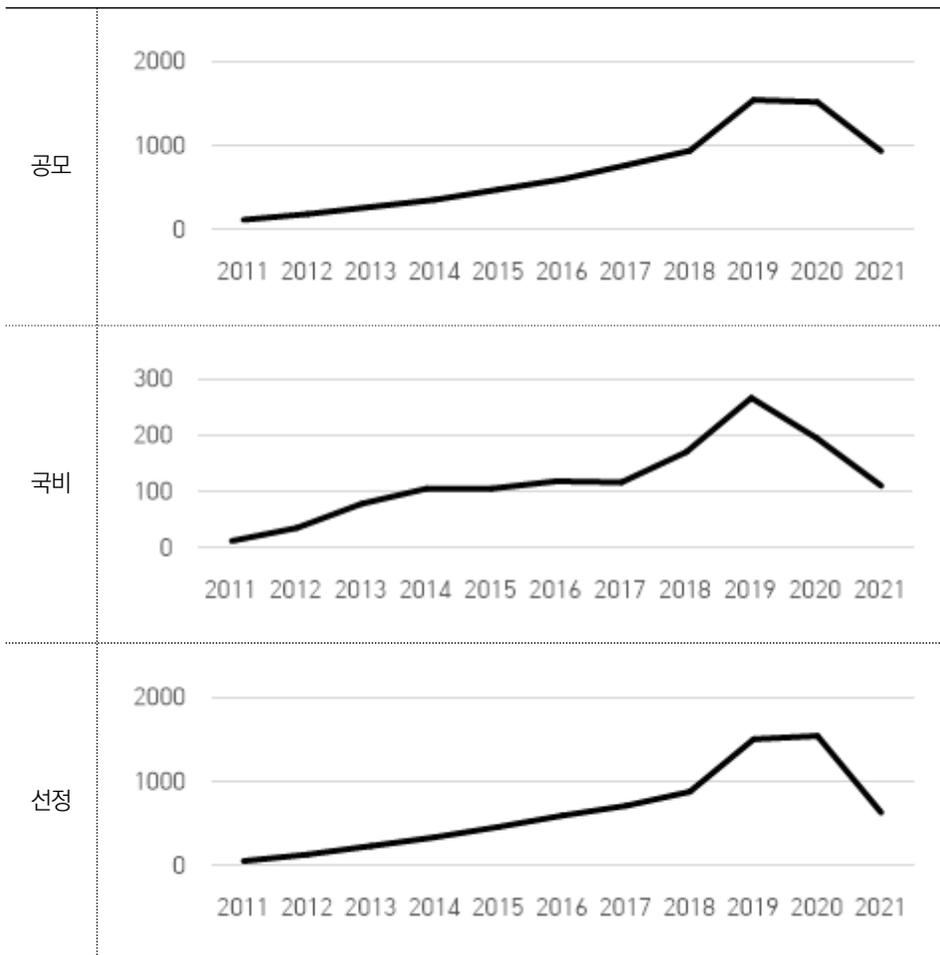
- 중앙 언론지와 더불어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 ‘공모’, ‘국고보조’, ‘국책사업’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기사를 확인하고, 연구자가 기사제목 및 내용을 추출하여 연관성이 높은 기사를 정리하였음
 - 하나의 취재내용에 대해 동일한 기사제목이 반복되어 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도일시와 신문명, 취재기자를 기준으로 중복된 기사를 제외함
 -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전국종합일간지 및 지역신문 기사 원문을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사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되지 않는 기사에 대해 구글 트렌드(www.trends.google.com), 네이버 데이터랩(<http://datalab.naver.com>)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 자료를 수집함
 -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분석에 사용된 신문기사 수는 10,924개임. 이는 2011년부터 공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트렌드 분석

- ‘공모’ 키워드 분석을 통해 2011-2021까지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았음
 - 2011년부터 서서히 관심도가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21년은 자료수집 기간이 9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이미 2018년도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임
- ‘국비’ 키워드 분석을 통해 2011-2021까지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았음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정체된 모습을 볼 수 있음. 2017년 이후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하고 있음

- ‘선정’ 키워드 분석을 통해 2011-2021까지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았음
 - ‘공모’로 검색할 때와 거의 동일한 관심도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공모’에 ‘선정’ 되었을 때 언론보도가 발생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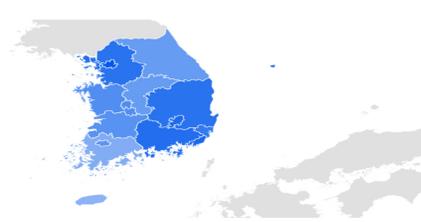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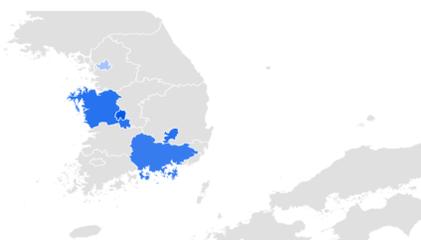
〈그림 3-3〉 키워드 검색어 트렌드 현황(2011~2021)



- 2021년에 한 해 주요 키워드 중심의 구글트렌드 지역별 관심도 분석을 제시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구글트렌드 지역별 관심도를 통해 특정 검색어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검색되었는지 상대적인 인기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공모’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 비해 도지역의 관심도가 광역시보다 관심도가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국비’를 키워드로 하였을 때 상위 5개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해당 키워드의 지역 간 상대적 관심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모두 높은 관심도를 보였음
 - 세 번째는 ‘선정’을 키워드로 포함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와 같은 광역시의 관심도가 충청남도 경상남도과 같은 도지역보다 높았음. 마지막으로 ‘공모’, ‘국비’, ‘선정’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에서 서울특별시가 상위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지역에 해당하였음

〈표 3-4〉 키워드별 지자체 관심도 현황(2021)

검색키워드: 공모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검색키워드: 국비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검색키워드: 선정	
	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출처: 구글트렌드(trends.google.com)

□ 텍스트마이닝 및 워드클라우드 언론동향 분석을 위한 분류

- 비정형데이터에 해당하는 신문기사(제목, 본문, URL 포함)를 검색하고 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확정된 10,924개 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을 실시함
 -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핵심 내용들 간 패턴 및 빈도를 분석하였고,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WordCloud)를 사용함
-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보도기사의 제목과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시기에 맞춰 연도별로 구분하였고,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보도지역 분류를 실시하였음
 - 이때 기초자치단체 보도는 상위 단체로 포함하여 지역별 분포와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음

- 보도목적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탈락한 상황을 알리려는 정보전달의 목적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비판이나 대책 마련 및 제도변화 촉구 등과 관련하여 의견개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의 경우로 구분함
 - 정보전달의 목적을 공모사업 선정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정과 관련한 정보전달 목적과 공모사업에 탈락하거나 사업유치에 실패한 비판으로 세분류하였음
- 기사의 주요 내용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공모사업 선정을 홍보하는 것인지, 사업유치에 실패하였을 경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인지, 공모사업 제도 자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보도인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독려하는 것인지,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장치를 홍보하는 것인지로 구분함
 - 이를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자치단체별, 연도별로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였고 어떠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워드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 기사에 대해 주요 키워드를 산출하고,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분석 분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3-5〉 분석 분류

구 분	분류내용
보도시기	○ 연단위 분류: 2011년 ~ 2021년 ※2021년의 경우 9월까지 한정
보도지역	○ 17개 시도
보도목적	1. 선정 정보전달 2. 유치실패 3. 기타(영향성)

구 분	분류내용
기사내용 유형화	1. 선정 관련 홍보 2. 비판 3. 영향성 4. 공모사업에 대한 내부 인센티브 5. 노력홍보
보도내용 키워드 추출	○ 기사에서 키워드 활용 빈도(워드클라우드, 단어빈도)

□ 언론동향 키워드 분석 결과(개괄적 현황)

○ 2011-2021년도 10,924개 보도기사 전체에 관한 개괄적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 3-6〉 보도기사의 현황(2011~2021)

구 분	내 용	빈도(건)	비율(%)
보도시기	2011년	124	1.13
	2012년	281	2.57
	2013년	490	4.48
	2014년	668	6.11
	2015년	744	6.80
	2016년	941	8.60
	2017년	1,099	10.05
	2018년	1,302	11.90
	2019년	2,196	20.07
	2020년	2,098	19.18
	2021년	997	9.11
보도지역	전국	45	0.41
	서울	138	1.26
	부산	177	1.62
	대구	139	1.27
	인천	222	2.03
	광주	337	3.08
	대전	341	3.12
	울산	177	1.62

구 분	내 용	빈도(건)	비율(%)
	세종	32	0.29
	경기	740	6.76
	강원	608	5.56
	충북	1,957	17.89
	충남	1,645	15.04
	전북	1,600	14.63
	전남	1,439	13.15
	경북	569	5.20
	경남	682	6.23
	제주	92	0.84
보도목적	선정 정보전달	10,758	98.46
	유치실패 정보전달	44	0.40
	기타	122	1.14
기사내용 유형	선정관련 홍보	10,758	98.46
	비판	44	0.40
	영향력	19	0.18
	내부 인센티브	15	0.15
	노력홍보	45	0.41
	기타	43	0.39

〈표 3-7〉 광역별 기사 빈도 수(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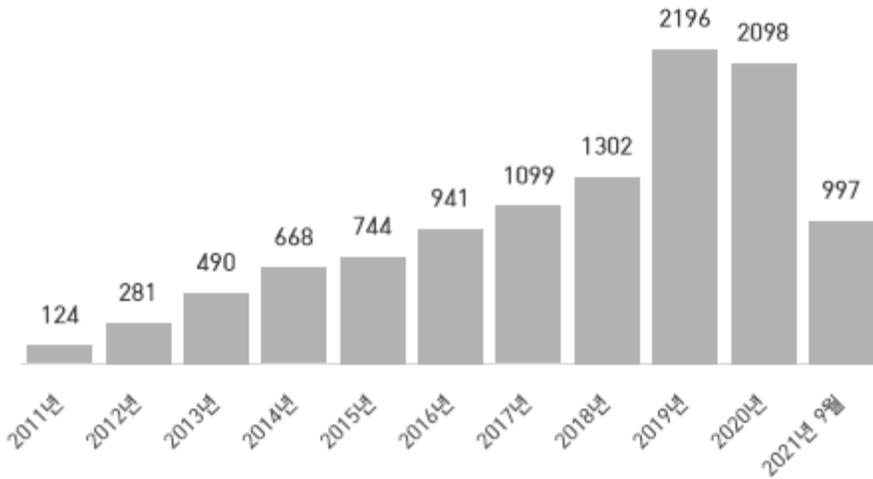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0	0	0	11	0	4	3	5	9	10	3
서울	0	3	6	4	16	13	15	17	13	33	18
부산	0	4	0	6	6	24	9	9	29	50	40
대구	0	13	7	14	7	11	10	8	36	27	6
인천	0	0	3	13	7	18	23	34	44	56	24
광주	2	3	21	27	33	45	30	45	57	60	14
대전	14	9	14	24	14	42	39	30	70	40	45
울산	0	3	7	7	20	15	33	23	27	27	15
세종	0	0	0	0	4	5	6	4	7	6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기	0	6	8	26	31	39	90	95	210	148	87
강원	0	14	33	35	58	48	41	66	107	133	73
충북	20	45	102	131	132	142	236	221	443	358	127
충남	22	60	78	75	96	135	144	207	327	360	141
전북	50	78	125	168	142	170	144	197	233	188	105
전남	10	24	43	70	101	134	145	175	283	321	133
경북	0	3	12	16	29	35	58	95	147	122	52
경남	1	7	24	39	34	52	70	71	132	143	109
제주	5	9	7	2	14	9	3	0	22	16	5
합계	124	281	490	668	744	941	1,099	1,302	2,196	2,098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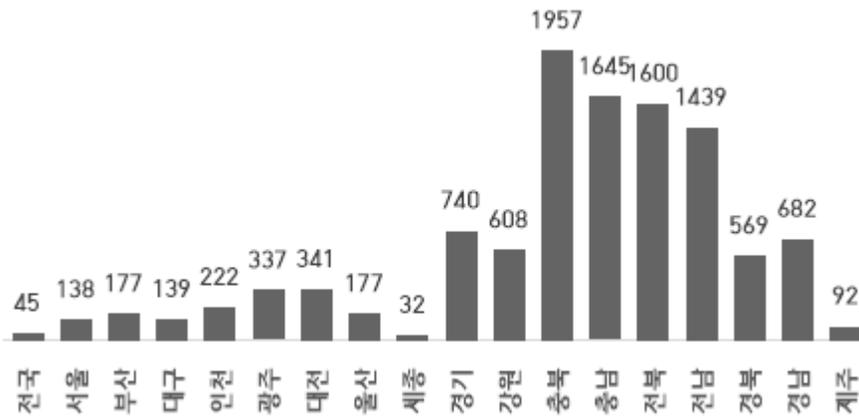
○ 연도별 보도시기에 따른 기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언론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196건의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고, 2020년에도 약 2,000건 이상의 기사가 보도되었음.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보도지역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공모사업과 관련된 기사가 충청북도가 1,957건으로 수집기사 전체에서 17.89%를 차지함. 다음으로 충청남도(15.04%), 전라북도(14.43%), 전라남도(13.15%)의 순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홍보와 기사가 많이 나타났음

〈그림 3-4〉 연도별 기사 빈도 현황(2011-2021.9)



〈그림 3-5〉 지역별 기사 빈도 현황(2011-2021.9)



- 보도목적에 따라 기사를 살펴보면 정보전달이 98.86%로 대부분의 기사를 차지하였음
 - 정보전달을 선정과 관련한 긍정적인 방향과 실패와 관련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세분류하면 선정 정보전달 목적이 98.46%를 차지하고, 유지실패 정보전달은 0.40%에 불과했음. 이를 통해 공모사업 관련 정보전달이 긍정적인 내용 중심의 보도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기타는 1.14%에 해당하며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하는 노력을 알리거나 공모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을 담고 있었음
 - 2020년 5월 7일에 보도된 “정부 공모사업, 정치논리 배제돼야 한다”라는 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치성도 강해지는 상황을 지적하였음
 -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선거철과 맞물려 국책사업이 포퓰리즘화되거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분열과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시간이 지날수록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심과 경쟁이 증가하고, 사업유치가 자치단체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언론동향 키워드 분석 결과(시기별 키워드 분석)

- 보도기사에서 자주 출현하는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도시기별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상위 10개씩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 기간 내내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선정’이었음. 그 뒤를 이어 ‘공모’ 또는 ‘공모사업’, ‘확보’, ‘국비’, ‘연속’ 등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함.
 - 전 기간에 걸쳐 상위 5개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6위부터 10위 사이의 키워드보다 월등히 높았음. 자료수집 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기사제목이

여러 차례 보도된 상황을 고려하면 공모 선정이라는 특정 틀을 갖춘 언론 보도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때문에 시기별 주요 키워드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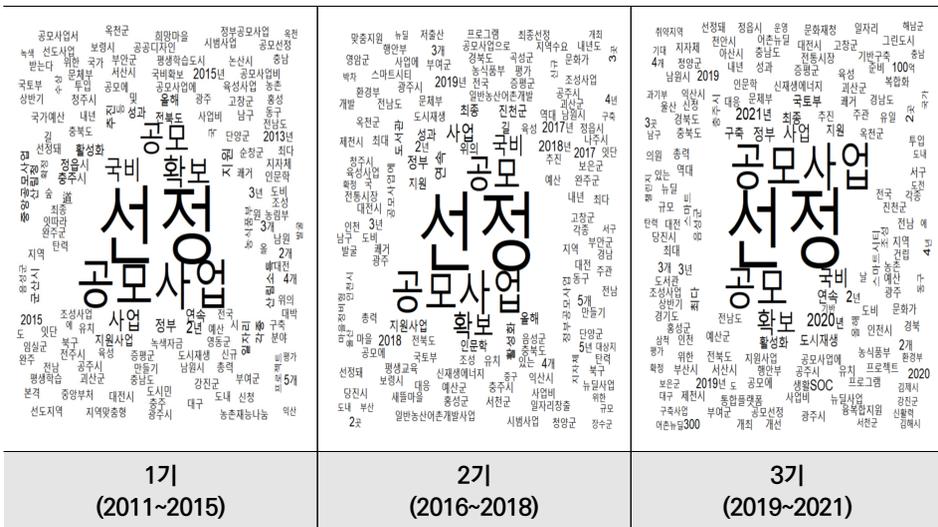
- 시간이 지나면서 ‘추진’ 또는 ‘도(道)’라는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감소하고, ‘연속’의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국책사업에 대한 확보 외에도 지속적인 유치를 강조하는 기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지자체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를 보도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사업확보나 국비 규모를 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8〉 연도별 주요 키워드 빈도분석(2011~2021)

키워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선정	66	선정	141	선정	230	선정	322	선정	443	선정	567	선정	
공모사업	51	공모사업	74	공모사업	160	공모사업	173	공모사업	217	공모사업	263	공모사업	
공모	27	공모	52	확보	84	확보	119	공모	144	공모	204	공모	
확보	14	확보	47	국비	62	공모	109	확보	128	확보	164	확보	
국비	10	국비	28	공모	54	국비	88	국비	78	국비	102	국비	
사업	9	사업	27	사업	38	사업	72	사업	57	사업	75	사업	
정부	9	성과	13	연속	24	정부	35	연속	33	정부	40	정부	
산림소득	8	지원	12	추진	20	지원	30	정부	33	성과	36	성과	
도(道)	7	올해	9	영동군	19	추진	27	지원	29	연속	36	연속	
녹색자금	6	충남도	9	성과	18	전북도	24	전북도	25	인문학	36	인문학	
2017		2018		2019		2020		2021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선정	688	선정	845	선정	1,432	선정	1,475	선정	599	선정	599	선정	599
공모사업	338	공모사업	451	공모사업	753	공모사업	706	공모	406	공모	406	공모	406
공모	252	공모	326	공모	582	공모	610	공모사업	392	공모사업	392	공모사업	392
확보	163	확보	204	확보	352	확보	301	확보	160	확보	160	확보	160
사업	100	국비	144	국비	226	사업	183	국비	99	국비	99	국비	99
국비	96	사업	119	사업	196	국비	170	연속	61	연속	61	연속	61
정부	52	연속	76	정부	97	연속	127	정부	61	정부	61	정부	61
연속	50	정부	70	연속	87	연속	87	최종	48	최종	48	최종	48
진천군	44	인문학	43	최종	86	최종	78	사업	46	사업	46	사업	46
활성화	44	길	41	지원	65	지원	70	지원	33	지원	33	지원	33

- 공모사업과 관련한 보도는 매년 반복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연도별로 각각 분석하였을 때 차이점이 미비하게 나타남
- 특정 시기별로 보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언론보도 건수의 증가 폭에 따라 시기를 3개로 구분하였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사 건수가 증가하지만 보도건수가 1,000개 이하인 1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도건수가 약 1,000개 수준인 2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3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표 3-9〉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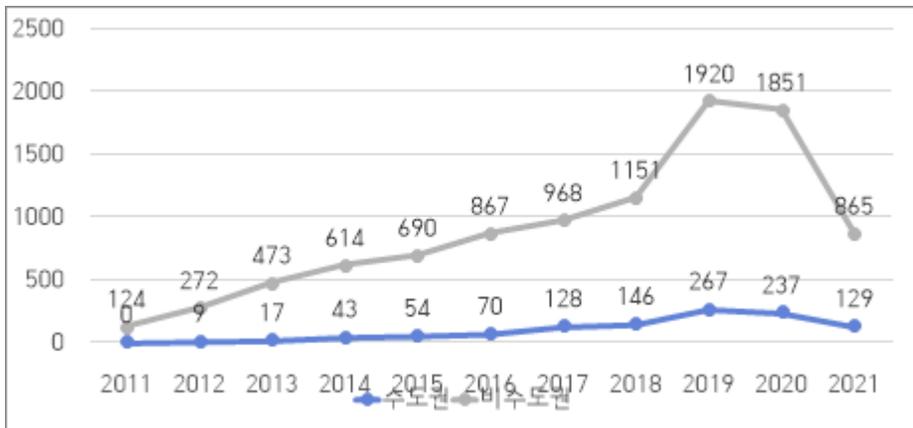
-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1기에서 3기까지 '선정'의 텍스트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공모' 또는 '공모사업', '국비', '확보'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음
- 사용빈도가 높은 소수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1기에서 3기로 진행될수록

공모사업명과 사업을 제공하는 중앙부처명,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명이 세분화되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언론동향 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분석 결과

- 17개 시도를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언론보도 건수와 기사내용 유형화를 실시하였음

〈그림 3-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도별 기사 건수 변화(2011~2021)



- 키워드 빈도분석과는 달리 연구자의 가치에 의해서 주요내용의 분류를 보도 내용을 유형화를 실시하였음(선정관련 홍보, 비판, 영향력, 내부 인센티브, 노력홍보로 구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선정 관련 홍보가 가장 빈번하게 보도되었음.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에 비해 선정 관련 홍보 기사에서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비율이 높았음. 수도권은 7.64%로 비수도권 5.72%에 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 수도권 보도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살펴보면 2021년 6월 3일 보도된 “구리시, 민선7기 공모사업 93건 220억원 건전 재정구현 발판”, 2018년 1월 7일 보도된 “인천 중구, 정부지원 공모예산 수입 166억 역대 최고 성과”, 2015년 12월 30일에 보도된 “증량구 외부재원 117억 확보 민선 6기 출범 이후 큰 성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로 건전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민선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임을 강조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임

〈표 3-10〉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사내용 유형화(2011~2021)

	선정관련 홍보	비판	영향력	내부 인센티브	노력홍보
수도권	1,087	3	4	4	2
비수도권	9,685	41	15	11	43
합계	10,772	44	19	15	45

- 반면 사업유치 실패와 관련한 보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공모사업 탈락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공모사업 탈락 사유를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계획 제시 및 전략부재와 같은 행정력 부족에서 찾았음
 - 특히 대전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연속하여 여러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서 “대전시 잇단 행정미숙 질타 목소리 의료관광 공모사업 탈락”(2018년 5월 17일 보도)과 “대전시 정부공모사업 연속 탈락 전략 부재...4차산업혁명특별시 명성 무색”(2019년 10월 8일 보도) 등과 같이 사업유치 실패를 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으로 취급하였고, 지역경제 위축으로까지 연결하여 비판하였음
- 유치사업 탈락에 대한 비판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는 기사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많았음

- 예를 들어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한 공무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사에서 우대하는 자치단체도 존재하였음⁴⁾
- 또한 공무원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토론회,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함을 보도하기도 하였음. 공모사업 유치를 행정역량으로 해석하고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비수도권에서는 공모사업 방식 변경과 같이 제도 변화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도기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공모사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지역가점을 부여하거나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2016년 7월 3일에 보도된 “대형 공모사업 내세워 지자체 흔들어대는 정부” 기사에서는 현재 공모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지자체 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나아가 정부가 지자체 줄 세우기용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2021년 8월 4일에 보도된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능사아냐...전략 대응으로 효율성 높여야” 기사에서는 공모사업의 지자체 비용 매칭제도에 예산이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보다는 주민생활 밀접도가 높은 사업을 유치할 것을 고려하였음. 여전히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가 자치단체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임

4) 머니투데이, “고흥군, 공모사업 유공 공무원에 인센티브 파격 부여”, 2019년 4월 8일.
Retrieved from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19040814070051471&type=2>
충청일보, “제천시, 공모사업 투자유치 공로 공무원 ‘파격인사’”, 2021년 1월 9일.
Retrieved from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833>

□ 언론동향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보도시기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사업 관련 보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 가장 많은 보도가 집중되었음
 - 보도지역을 기준으로 충청북도가 가장 활발하게 보도를 진행했으며, 충청남도도 비슷한 건수만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보도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보전달 목적의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전달의 세부 내용은 비판이나 회의적 의견보다 선정과 관련한 홍보가 큰 비중으로 보도되고 있었음
- 보도시기별 키워드를 추출하고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빈도를 시각화 한 결과, 전 기간에 걸쳐 ‘공모’, ‘선정’에 관한 키워드가 빈도가 가장 높았고 1기에서 3기로 가면서 ‘연속’ 키워드와 공모사업명으로 세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17개 시·도를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도건수와 기사내용을 유형화하였음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보도건수가 많았지만 세부적인 기사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선정관련 보도에서 확보한 국비 규모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공모방식 제도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3절 수행실태 분석

-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및 특징, 그리고 기존에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수도권 집중 및 지방비 과다 부담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기초로 2018-2019년도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2018년과 2019년에 진행(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모두 포함)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308개임⁵⁾⁶⁾
 - 하나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사업주체로 다수의 지자체가 중복 선정 가능하므로 국고보조사업 발주 부처기준 사업수와 사업주체인 지자체기준 사업수 간 차이가 존재함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17개 지자체 모두가 선정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사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9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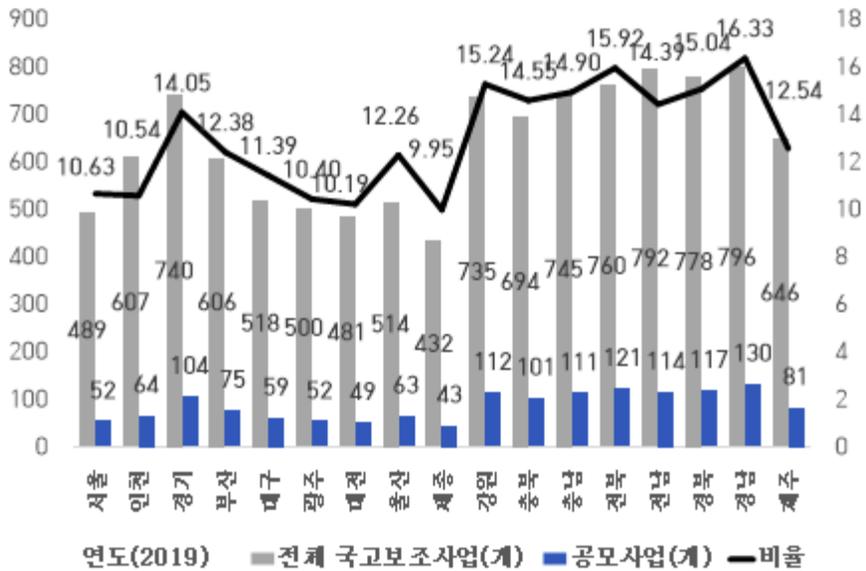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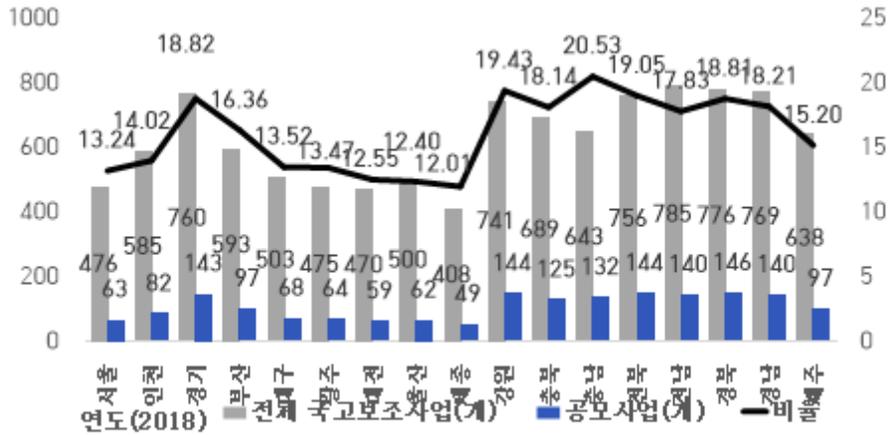
- 먼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및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냈음
 - 2018년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전남(785개)이 가장 많았으며,

5) 제 1절의 기초현황에서의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은 202개임. 이는 단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부 사업을 제외한 것임

6) 2019년 신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총 91건임

- 경북(776개), 경남(769개) 순임. 공모사업 시행 수의 경우 경북(146개), 강원과 전북(144개), 경기(143개), 경남(140개) 순으로 나타났음
- 2019년도 기준으로는 경남(796개), 전남(792개), 경북(778개) 순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은 경남(130개), 전북(121개), 경북(117개), 전남(114개) 순으로 시행되고 있었음
 -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의 상위 광역자치단체는 전남, 경북, 경남 등이며,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서도 경남, 경북이 절대적 사업 시행 수가 많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또한 경남(2018년 18.21%, 2019년 16.33%), 경북(2018년 18.81%, 2019년 15.04%)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7〉 2018~2019 전체/공모 국고보조사업의 수, 비율



-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2019년도 지방비 부담률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음
-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2019년 평균 32.33%로 2018년 대비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국고보조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절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비 금액은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충북, 전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한 곳임. 특히 충남의 경우 1.62%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표 3-11〉 2018-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단위: 천원, %)

	2018			2019		
	총 국고보조사업비	순지방비	지방비 부담률	총 국고보조사업비	순지방비	지방비 부담률
서울	9,086,957,045	4,159,672,851	45.78	10,112,498,566	4,384,997,137	43.36
세종	478,344,297	181,746,665	37.99	513,414,660	189,311,462	36.87
울산	1,235,480,315	429,893,378	34.8	1,483,782,538	507,204,639	34.18
강원	3,701,029,538	1,230,623,986	33.25	4,142,317,114	1,387,182,310	33.49
충북	3,108,225,718	997,602,792	32.1	3,520,064,036	1,174,088,492	33.35
충남	4,347,090,031	1,355,321,319	31.18	4,733,039,148	1,552,250,719	32.8
전북	4,872,137,943	1,530,399,742	31.41	5,304,746,835	1,703,295,430	32.11
경남	5,908,862,815	1,883,533,255	31.88	6,703,317,075	2,143,060,642	31.97
경북	6,721,189,788	2,063,365,985	30.7	7,025,296,665	2,240,155,511	31.89
전남	5,967,165,878	1,823,812,603	30.56	6,424,701,134	2,045,629,654	31.84
대전	1,788,796,550	576,476,043	32.23	2,085,725,891	661,945,140	31.74
광주	2,029,318,232	629,811,917	31.04	2,438,407,619	756,808,442	31.04
경기	11,825,586,831	3,589,142,665	30.35	13,842,417,172	4,242,632,597	30.65
제주	1,755,411,219	529,267,024	30.15	1,984,012,092	601,501,283	30.32
대구	3,073,147,194	891,436,371	29.01	3,649,731,478	1,051,763,011	28.82
인천	3,371,999,278	1,019,327,952	30.23	3,930,959,702	1,099,044,779	27.96
부산	4,741,509,153	1,374,922,432	29	5,437,814,277	1,479,744,327	27.21
평균	4,353,661,872	1,427,432,764	32.45	4,901,896,824	1,601,212,681	32.33

주: 총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순지방비의 합계(재정용자금, 자부담기타 제외)

○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9년도 지방비 부담률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음

〈표 3-12〉 2018-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단위: 천원, %)

	2018			2019		
	총 국고보조사업비	순지방비	지방비 부담률	총 국고보조사업비	순지방비	지방비 부담률
서울	163,196,588	85,964,047	52.68	171,903,358	86,695,194	50.43
제주	145,527,731	67,963,841	46.7	172,447,247	83,321,177	48.32
대구	157,475,334	70,949,972	45.05	243,139,328	116,424,623	47.88
광주	120,741,543	54,028,727	44.75	166,847,913	79,091,813	47.4
대전	111,174,687	51,435,544	46.27	132,032,895	61,490,100	46.57
세종	39,894,455	17,114,543	42.9	38,389,782	17,837,145	46.46
부산	258,929,437	122,871,787	47.45	275,528,315	126,290,332	45.84
인천	147,409,072	72,109,277	48.92	163,158,375	72,356,371	44.35
울산	109,011,163	52,339,474	48.01	117,522,870	51,345,072	43.69
강원	256,351,307	117,032,811	45.65	315,657,412	137,405,569	43.53
전북	409,603,880	189,699,688	46.31	476,192,598	204,066,743	42.85
경북	383,248,320	173,067,658	45.16	533,919,043	226,993,700	42.51
경기	410,804,658	185,011,994	45.04	438,611,488	182,949,461	41.71
충남	299,475,947	140,804,355	47.02	304,428,660	126,688,125	41.62
충북	205,166,399	91,667,612	44.68	230,193,334	95,730,918	41.59
경남	385,290,593	183,187,294	47.55	461,942,746	190,523,866	41.24
전남	423,632,892	181,490,384	42.84	523,006,861	211,529,979	40.44
평균	236,878,471	109,219,942	46.29	280,289,543	121,808,246	4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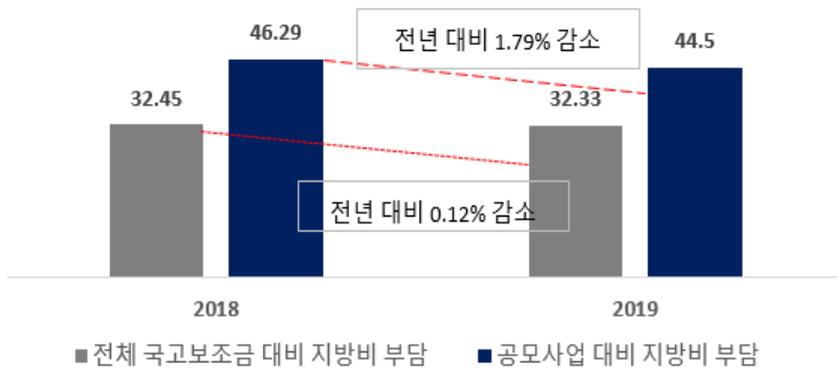
주: 총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순지방비의 합계(재정용자금, 자부담기타 제외)

- 20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44.50%로 전년 대비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 대비 공모 국고보조비가 절대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총 4곳이

며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순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전년도 대비하여 집중되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비 부담률만을 살펴보면, 지방비는 전년 대비하여 감소했기 때문에 매년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2018-19년만을 기준으로 볼 때,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은 지방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8〉 2018-19 지방비 부담률 변화



- 마지막으로 2019년도 신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19년도에 신규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률 평균은 36.34%로 2019년 전체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률이 44.5%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님
 - 그러나 광역 간 비교 결과, 36.34% 평균치보다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총 7개 광역자치단체가 해당하고 있고, 광주, 대전, 세종 순으로 높은 수준의 지방비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3〉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 지방비부담률

(단위: 개, 천원, %)

2019년도	신규 사업 수	총국고보조사업비	순지방비	지방비부담률
광주	3	484,957	279,275	57.59
대전	3	2,706,957	1,334,675	49.31
세종	2	206,958	84,676	40.91
서울	4	2,503,351	999,488	39.93
대구	4	2,566,607	1,011,875	39.42
충북	7	10,428,951	3,995,322	38.31
경기	7	6,693,047	2,441,190	36.47
전북	10	59,453,199	20,691,117	34.8
경북	11	59,055,946	20,148,889	34.12
부산	6	3,452,036	1,153,104	33.4
경남	8	67,325,772	21,019,190	31.22
울산	4	3,808,157	1,184,575	31.11
제주	5	9,850,597	3,049,090	30.95
강원	3	7,164,100	2,171,818	30.32
인천	4	16,290,650	4,934,218	30.29
전남	5	81,547,200	24,490,618	30.03
충남	5	19,638,386	5,820,104	29.64
평균	합계(91건)	20,775,110	6,753,484	36.34

주: 총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순지방비의 합계(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제외)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현황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의 인프라와 높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중 하나임
- 본 장에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와 비수도권(이외 14개 광역 단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함

-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및 공모형 국고사업의 수와 비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수도권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의 전체 국고보조 사업수는 평균 607개에서 612개로 증가하였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96개에서 73개로 사업 수가 감소하였음
 - 비수도권의 또한 전체 국고보조 사업수는 2018년 625개에서 2019년도 643개로 증가하였으나, 공모사업은 2018년도 105개에서 2019년도 88개로 감소하였음
 - 2019년 기준 비수도권 공모사업은 경남(130개), 전북(121개), 경북(117개) 순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4〉 수도권/비수도권 국고보조사업의 수

(단위: 개, %)

수도권					비수도권				
연도	지역	전체 국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연도	지역	전체 국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2018	서울	476	63	13.24	2018	부산	593	97	16.36
2019	서울	489	52	10.63	2019	부산	606	75	12.38
2018	인천	585	82	14.02	2018	대구	503	68	13.52
2019	인천	607	64	10.54	2019	대구	518	59	11.39
2018	경기	760	143	18.82	2018	광주	475	64	13.47
2019	경기	740	104	14.05	2019	광주	500	52	10.40
2018 평균		607	96	15.82	2018	대전	470	59	12.55
2019 평균		612	73	11.98	2019	대전	481	49	10.19
					2018	울산	500	62	12.40
					2019	울산	514	63	12.26
					2018	세종	408	49	12.01
					2019	세종	432	43	9.95
					2018	강원	741	144	19.43

수도권					비수도권				
연도	지역	전체 국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연도	지역	전체 국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2019	강원	735	112	15.24
					2018	충북	689	125	18.14
					2019	충북	694	101	14.55
					2018	충남	643	132	20.53
					2019	충남	745	111	14.90
					2018	전북	756	144	19.05
					2019	전북	760	121	15.92
					2018	전남	785	140	17.83
					2019	전남	792	114	14.39
					2018	경북	776	146	18.81
					2019	경북	778	117	15.04
					2018	경남	769	140	18.21
					2019	경남	796	130	16.33
					2018	제주	638	97	15.20
					2019	제주	646	81	12.54
					2018 평균		625	105	16.77
					2019 평균		643	88	13.64

- 다음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았음. 2019년도 기준으로 지방비 부담률은 32.33%임. 수도권인 경우 33.99%, 비수도권의 경우 31.9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43.36%로 가장 큰 지방비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세종시가 36.87%로 가장 높았음

〈표 3-15〉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단위: 천원, %)

		2018년(전체)				2019년(전체)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서울	4,927,284,194	4,159,672,851	9,086,957,045	45.78	5,727,501,429	4,384,997,137	10,112,498,566	43.36
	인천	2,352,671,326	1,019,327,952	3,371,999,278	30.23	2,831,914,923	1,099,044,779	3,930,959,702	27.96
	경기	8,236,444,166	3,589,142,665	11,825,586,831	30.35	9,599,784,575	4,242,632,597	13,842,417,172	30.65
수도권 평균		5,172,133,229	2,922,714,489	8,094,847,718	35.45	6,053,066,976	3,242,224,838	9,295,291,813	33.99
비수도권	부산	3,366,586,721	1,374,922,432	4,741,509,153	29.00	3,958,069,950	1,479,744,327	5,437,814,277	27.21
	대구	2,181,710,823	891,436,371	3,073,147,194	29.01	2,597,968,467	1,051,763,011	3,649,731,478	28.82
	광주	1,399,506,315	629,811,917	2,029,318,232	31.04	1,681,599,177	756,808,442	2,438,407,619	31.04
	대전	1,212,320,507	576,476,043	1,788,796,550	32.23	1,423,780,751	661,945,140	2,085,725,891	31.74
	울산	805,586,937	429,893,378	1,235,480,315	34.80	976,577,899	507,204,639	1,483,782,538	34.18
	세종	296,597,632	181,746,665	478,344,297	37.99	324,103,198	189,311,462	513,414,660	36.87
	강원	2,470,405,552	1,230,623,986	3,701,029,538	33.25	2,755,134,804	1,387,182,310	4,142,317,114	33.49
	충북	2,110,622,926	997,602,792	3,108,225,718	32.10	2,345,975,544	1,174,088,492	3,520,064,036	33.35
	충남	2,991,768,712	1,355,321,319	4,347,090,031	31.18	3,180,788,429	1,552,250,719	4,733,039,148	32.80
	전북	3,341,738,201	1,530,399,742	4,872,137,943	31.41	3,601,451,405	1,703,295,430	5,304,746,835	32.11
	전남	4,143,353,275	1,823,812,603	5,967,165,878	30.56	4,379,071,480	2,045,629,654	6,424,701,134	31.84
	경북	4,657,823,803	2,063,365,985	6,721,189,788	30.70	4,785,141,154	2,240,155,511	7,025,296,665	31.89
	경남	4,025,329,560	1,883,533,255	5,908,862,815	31.88	4,560,256,433	2,143,060,642	6,703,317,075	31.97
	제주	1,226,144,195	529,267,024	1,755,411,219	30.15	1,382,510,809	601,501,283	1,984,012,092	30.32
비수도권 평균		2,444,963,940	1,107,015,251	3,551,979,191	31.81	2,710,887,821	1,249,567,219	3,960,455,040	31.97
전체평균		2,926,229,109	1,427,432,764	4,353,661,872	32.45	3,300,684,143	1,601,212,681	4,901,896,824	32.33

주: 총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순지방비의 합계(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제외)

- 공모형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비 부담률은 44.5%임. 수도권의 경우 45.5%, 비수도권의 경우 44.28%로 전체 평균 대비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과 같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서울이 50.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타 인천, 경기도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비수도권의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은 44.28%이나,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은 광역자치단체 평균치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 신규 공모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36.34%, 수도권 평균 35.56%, 비수도권 평균 36.51%로 나타남
 - 전체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과는 다르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음
 -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주 57.59%, 대전 49.31% 순으로 2019년도 신규 공모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6〉 수도권/비수도권 신규 공모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단위: 천원, %)

		2019년(신규공모사업)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총국고보조사업비	지방비부담률
수도권	서울	1,503,863	999,488	2,503,351	39.93
	인천	11,356,432	4,934,218	16,290,650	30.29
	경기	4,251,857	2,441,190	6,693,047	36.47
수도권 평균		5,704,051	2,791,632	8,495,683	35.56
비수도권	부산	2,298,932	1,153,104	3,452,036	33.40
	대구	1,554,732	1,011,875	2,566,607	39.42
	광주	205,682	279,275	484,957	57.59
	대전	1,372,282	1,334,675	2,706,957	49.31
	울산	2,623,582	1,184,575	3,808,157	31.11
	세종	122,282	84,676	206,958	40.91
	강원	4,992,282	2,171,818	7,164,100	30.32
	충북	6,433,629	3,995,322	10,428,951	38.31

		2019년(신규공모사업)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총국고보조사업비	지방비부담률
	충남	13,818,282	5,820,104	19,638,386	29.64
	전북	38,762,082	20,691,117	59,453,199	34.80
	전남	57,056,582	24,490,618	81,547,200	30.03
	경북	38,907,057	20,148,889	59,055,946	34.12
	경남	46,306,582	21,019,190	67,325,772	31.22
	제주	6,801,507	3,049,090	9,850,597	30.95
	비수도권 평균	15,803,964	7,602,452	23,406,416	36.51
	전체평균	14,021,626	6,753,484	20,775,110	36.34

주: 총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순지방비의 합계(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제외)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모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가
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지방
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실증 결과는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전년도 대비 지방
비 부담률 증가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음
- 둘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공모사업은 서울에 집중 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
히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도 약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지역 인프라와 우수한 재정력으로 인해 공모사
업의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수도권에 경우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2019년 기준
44.28%이나 평균치 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8년 대비 공모사업의 선정 수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
닌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었음
 - 구체적으로 2019년 신규 공모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광역 간 비교 결과,

제주 5건, 대구 4건, 광주 3건, 대전 3건으로 전체 91건 중 15건(16.5%)에 해당하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우 신규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금액구간 별 분석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금액구간 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합친 총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음
 - 2018년도 기준 0~1억 미만 공모사업은 충북과 경북이 21건, 1억~10억 미만은 강원 65건, 10억~50억 미만 및 50억 이상 전남이 각각 52건, 26건으로 가장 많은 공모사업 건수를 보였음

〈표 3-17〉 금액구간 별 공모사업 건수(2018)

(단위: 건)

2018	0~1억 미만	1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합계
서울	10	30	11	12	63
인천	16	44	18	4	82
경기	18	64	41	20	143
부산	20	46	20	11	97
대구	15	30	13	8	68
광주	16	33	6	9	64
대전	11	34	10	4	59
울산	13	36	6	7	62
세종	16	24	7	2	49
강원	17	65	46	16	144
충북	21	53	42	9	125
충남	13	55	46	18	132
전북	20	57	48	19	144
전남	8	54	52	26	140
경북	21	53	51	21	146
경남	15	60	43	22	140
제주	18	46	23	10	97

- 2019년의 경우 기준 0~1억 미만 공모사업은 세종이 16건, 1억~10억 미만은 경남 51건, 10억~50억 미만은 전북이 44건이며, 마지막으로 50억 이상은 경북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공모사업 건수를 보였음

〈표 3-18〉 금액구간 별 공모사업 건수(2019)

(단위: 건)

2019	0~1억 미만	1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합계
서울	11	24	7	10	52
인천	13	31	13	7	64
경기	14	39	28	23	104
부산	10	39	13	13	75
대구	13	31	6	9	59
광주	11	25	8	8	52
대전	14	20	10	5	49
울산	12	34	10	7	63
세종	16	20	6	1	43
강원	12	49	32	19	112
충북	10	42	33	16	101
충남	14	44	39	14	111
전북	10	43	44	24	121
전남	7	43	41	23	114
경북	13	36	39	29	117
경남	15	51	42	22	130
제주	15	38	16	12	81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금액으로 추계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임
 - 2018년도를 기준으로 0~1억 미만 공모사업은 전북(공동 3위지역, 20건)이 약 18억, 1억~10억 미만은 강원(65건) 약 260억, 10억~50억 미만은 경북(건수 2위지역, 51건) 약 1,350억이며, 50억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전남(26건)으로 약 3,40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0~1억 미만 공모사업은 세종(17건)이 약 8억 4천만원, 1억~10억 미만은 강원(건수 2위지역, 49건)이 약 210억원, 10억~50억 미만은 경북(건수 4위지역, 39건)이 약 1,005억, 50억 이상의 경우 역시 경북(29건)이 약 4,680억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9〉 금액구간 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2018	0~1억 미만			1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서울	264,742	151,667	416,409	5,371,147	4,195,634	9,566,781	13,337,834	9,092,978	25,344,812	23,289,166	24,461,368	134,903,571
인천	263,182	277,899	648,961	8,868,546	7,270,434	17,270,727	22,900,217	17,809,080	42,991,221	43,267,850	46,751,864	90,019,714
경기	461,262	376,577	889,751	12,679,155	9,084,690	24,287,135	44,308,014	36,717,223	92,050,792	168,344,233	138,833,504	327,586,473
부산	511,759	368,915	929,474	10,102,715	7,960,057	19,464,456	24,797,762	21,719,793	48,447,122	100,645,414	92,823,022	209,877,589
대구	381,997	330,499	769,247	5,164,596	4,421,798	11,552,316	12,969,374	9,887,905	23,867,273	68,009,395	56,309,770	128,407,328
광주	383,797	266,566	652,763	5,834,631	4,867,228	11,094,059	7,716,000	4,405,500	12,121,500	52,778,388	44,489,433	97,379,105
대전	237,788	234,531	472,319	5,594,948	5,244,636	11,106,674	12,387,707	8,630,244	21,031,419	41,518,700	37,326,133	78,844,833
울산	285,517	270,735	650,752	5,558,727	5,385,645	11,635,855	8,443,175	5,616,152	14,126,927	42,384,270	41,066,942	83,451,212
세종	394,184	343,633	800,317	3,475,347	3,626,738	7,924,489	10,890,381	5,124,172	16,014,553	8,020,000	8,020,000	16,040,000
강원	434,170	281,436	792,939	12,798,902	10,868,282	25,995,354	50,586,103	40,239,510	101,760,588	75,499,321	65,643,583	157,161,350
충북	534,008	392,736	987,917	11,669,057	9,639,554	23,439,211	51,089,458	37,961,169	101,345,554	50,206,264	43,674,153	99,676,880
충남	311,069	211,891	543,093	10,631,964	10,051,719	23,532,595	53,803,986	43,462,918	108,551,831	93,924,573	87,077,827	200,916,197
전북	603,963	440,560	1,139,923	10,965,090	8,238,469	21,401,982	54,798,297	47,987,195	116,560,935	153,536,842	133,033,464	304,512,968
전남	187,766	178,780	418,335	10,945,856	8,378,379	20,479,715	54,113,365	47,098,950	120,678,871	176,895,521	125,834,275	342,082,889
경북	539,883	423,389	1,055,405	11,279,141	9,636,735	23,001,959	61,618,348	56,815,060	135,248,199	136,743,290	106,192,474	287,517,633
경남	343,039	253,805	636,011	13,728,546	9,287,217	24,525,648	43,874,205	33,998,937	93,369,794	144,157,509	139,647,335	318,028,991
제주	386,945	378,677	872,485	7,817,573	6,358,409	17,228,152	25,713,372	19,249,172	48,951,800	43,646,000	41,977,583	117,888,249

주: 합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계속)

2019	0~1억 미만			1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서울	315,991	295,676	611,667	5,208,082	4,359,900	9,888,212	7,487,326	7,219,290	15,326,616	72,196,765	74,820,328	148,302,584
인천	282,709	200,509	544,068	5,484,074	5,015,568	11,103,189	18,513,335	12,301,814	32,015,149	66,521,886	54,838,480	121,665,447
경기	369,954	251,327	666,957	9,225,966	6,686,014	17,437,190	27,742,993	24,072,300	59,517,216	218,323,114	151,939,820	401,738,029
부산	258,106	216,434	511,422	7,385,049	6,190,287	14,516,147	15,646,143	14,989,309	31,235,360	125,948,685	104,894,302	233,897,642
대구	1,097,549	1,003,854	679,450	6,564,101	5,227,387	12,524,743	5,725,721	6,407,459	12,133,180	114,053,651	104,490,659	219,008,525
광주	251,287	176,600	442,887	3,885,836	3,496,463	7,566,769	12,459,818	7,510,681	19,975,699	71,159,159	67,908,069	139,067,228
대전	289,763	237,787	548,411	3,791,922	3,097,327	7,035,719	14,304,574	13,693,612	27,998,186	52,156,536	44,461,374	97,256,508
울산	283,391	185,254	495,443	4,623,316	4,035,965	9,527,777	11,962,349	8,665,617	20,627,966	49,308,742	38,458,236	88,024,418
세종	423,797	341,592	845,011	4,095,255	3,491,900	8,113,111	8,683,585	6,653,653	15,337,238	7,350,000	7,350,000	14,700,000
강원	309,878	197,451	518,377	10,312,757	8,685,661	21,212,901	34,753,766	29,523,546	71,835,342	132,875,442	98,998,911	244,281,602
충북	278,132	213,215	524,047	8,319,819	7,272,838	16,685,177	38,485,671	25,543,076	73,190,580	87,378,794	62,701,789	153,147,326
충남	415,212	304,974	758,002	8,166,868	6,870,871	16,824,448	44,163,475	32,043,979	86,239,696	124,994,980	87,468,301	225,394,840
전북	248,451	115,901	406,320	7,437,273	7,237,023	16,185,836	50,044,661	42,949,281	101,712,835	214,395,470	153,764,538	387,497,425
전남	258,412	188,177	476,589	8,706,480	6,854,134	16,800,723	40,865,760	39,690,471	93,163,292	261,646,230	164,797,197	439,193,607
경북	454,931	293,333	767,608	7,290,172	5,594,126	14,328,998	50,634,551	40,115,169	105,004,058	248,545,689	180,991,072	468,530,841
경남	372,144	181,865	628,013	9,735,770	8,621,025	19,488,081	50,551,975	40,914,486	101,659,320	210,758,991	140,806,490	380,175,358
제주	367,143	323,901	746,986	7,239,325	5,046,054	13,635,987	15,589,602	13,468,526	30,634,878	65,930,000	64,482,696	165,216,401

주: 합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부처별 분류

- 다음 표는 부처별로 분류하여 광역시 별 총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를 나타냈음
 -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를 비교해 볼 때, 2018-2019년도 동일하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가장 많았음
 - 이외의 세종, 경기 등 총 10개의 광역단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의 경우 2018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 가장 많았음

〈표 3-20〉 부처별 공모사업 건수

(단위: 건)

부처/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신림청		해양수산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6	3	15	13	10	8	8	7	0	1	0	0
부산	14	12	34	16	11	10	7	5	3	2	7	10
대구	8	9	21	13	9	10	7	7	0	2	0	0
인천	13	9	23	13	10	11	7	7	2	3	5	4
광주	7	7	18	11	7	6	8	8	2	1	0	0
대전	7	5	14	6	10	11	6	6	3	5	0	0
울산	9	11	18	13	7	8	4	4	2	4	2	3
세종	13	9	9	7	5	7	5	4	2	1	0	0
경기	42	30	31	14	13	11	10	9	10	11	6	5
강원	42	35	30	15	12	10	10	8	11	12	10	9
충북	44	29	24	13	7	9	9	7	11	13	4	4
충남	42	35	24	14	11	9	8	10	10	10	11	11
전북	55	45	25	14	12	10	9	10	11	10	5	8
전남	48	36	26	16	6	9	10	8	10	10	15	13
경북	57	43	26	14	11	8	9	8	11	11	8	8
경남	45	40	25	16	11	13	9	10	10	12	13	11
제주	31	23	14	9	9	9	8	7	5	4	9	8

(계속)

부처/ 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5	6	3	3	4	3	3	3	2	1	1	1
부산	3	4	3	4	3	3	3	3	2	1	1	1
대구	3	4	5	2	3	3	4	4	2	1	1	1
인천	3	3	5	3	4	3	3	3	2	1	1	1
광주	2	5	6	4	3	3	3	2	2	1	1	1
대전	3	4	2	1	3	3	3	2	2	1	1	1
울산	2	5	3	3	3	3	3	3	2	1	1	1
세종	4	4	1	2	3	3	3	2	0	0	1	1
경기	6	5	8	6	5	4	3	3	2	1	1	1
강원	6	7	7	4	5	5	3	2	2	1	1	1
충북	5	5	4	5	4	4	3	3	2	1	2	3
충남	5	5	3	5	6	3	3	2	2	1	1	1
전북	5	6	4	6	7	5	4	3	2	1	1	1
전남	5	5	5	5	4	4	3	3	2	1	1	1
경북	5	6	4	5	5	4	3	3	1	1	1	1
경남	4	5	7	7	5	6	3	3	2	1	1	1
제주	5	4	3	3	4	5	4	5	1	1	1	1

(계속)

부처/ 연도	농촌진흥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1	1	1	1	2	1	2	0	0	0
부산	1	1	1	1	2	2	2	0	0	0
대구	1	1	1	1	2	1	1	0	0	0
인천	1	1	1	1	2	1	0	0	0	0
광주	1	1	1	1	2	1	1	0	0	0
대전	1	1	1	1	2	2	1	0	0	0
울산	1	1	1	1	2	2	2	0	0	0
세종	1	1	0	0	2	2	0	0	0	0
경기	1	1	1	1	2	2	2	0	0	0
강원	1	1	1	1	1	1	2	0	0	0
충북	1	1	1	1	2	2	1	0	1	1
충남	1	1	1	1	2	2	1	0	1	1
전북	1	1	1	1	1	0	1	0	0	0
전남	1	1	1	1	2	1	1	0	0	0
경북	1	1	1	1	2	2	0	0	1	1
경남	1	1	1	1	2	2	0	0	1	1
제주	1	1	1	1	1	0	0	0	0	0

- 금액에 따른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처별 총 사업비 순으로 부서를 나열하였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높은 사업비는 2018년도 경남, 2019년도 광주로 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개년 모두 전북임
 - 전체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중 가장 높은 사업비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부처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0	0	2,346,400	2,004,235	9,571,558	0	8,970,637	6,836,299	9,385,155	27,599,254	7,751,840	5,426,266
부산	30,470,167	34,722,509	3,221,312	1,196,021	506,013	0	10,672,648	7,040,503	12,545,600	35,084,688	12,609,295	10,041,037
대구	0	0	1,951,152	1,487,060	93,375	0	6,785,586	6,362,757	18,801,500	55,721,990	14,029,130	12,440,483
인천	4,965,833	20,966,143	1,879,100	2,237,008	0	0	4,908,900	4,743,621	12,213,138	22,992,050	7,052,805	6,949,062
광주	0	0	4,967,700	1,399,424	70,000	0	5,934,278	3,630,160	10,088,500	21,091,334	9,377,614	7,526,044
대전	0	0	1,577,522	1,108,114	37,025	0	8,684,133	10,750,292	15,721,200	30,238,871	3,981,654	3,615,375
울산	920,000	5,504,320	812,252	933,924	8,066,778	0	6,724,250	7,713,113	9,144,100	13,063,700	10,820,185	7,656,872
세종	0	0	1,142,702	890,910	0	0	2,844,100	3,645,887	4,373,000	4,303,881	1,872,010	1,549,150
경기	7,788,400	12,731,155	5,113,800	7,110,164	280,000	0	38,491,637	40,519,632	32,647,965	52,752,932	13,285,327	11,454,193
강원	12,482,333	18,067,263	4,473,000	4,251,487	745,000	0	1,315,500	59,400	18,109,563	42,364,625	5,568,880	5,570,744
충북	4,621,666	12,226,000	2,807,700	3,042,544	40,000	0	3,239,600	4,823,036	12,109,350	24,069,376	10,173,656	9,586,501
충남	25,256,443	34,817,469	4,737,000	6,373,245	451,280	0	4,176,000	3,248,163	15,630,635	27,586,120	5,784,627	4,280,878
전북	1,602,233	32,818,920	6,366,000	6,665,190	100,000	0	1,450,000	0	22,103,732	36,605,175	12,412,576	9,757,963
전남	51,061,334	131,928,303	10,231,500	6,651,750	20,400	0	7,517,167	5,957,147	31,619,238	68,144,260	19,562,576	13,394,962
경북	13,439,047	31,183,932	7,858,322	7,993,898	0	0	7,079,878	2,451,089	20,070,738	62,228,150	9,213,745	7,630,395
경남	30,543,371	75,930,760	4,447,500	4,703,310	0	0	9,775,471	7,132,416	17,542,320	55,933,119	19,631,981	12,370,425
제주	22,884,409	46,116,515	2,287,046	2,135,200	0	0	541,500	0	4,532,500	13,984,000	4,294,082	3,496,809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계속)

부처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390,798	2,285,518	19,196,369	22,065,497	11,355,926	1,198,286	0	0	570,960	277,960	3,668,024	4,824,942
부산	92,704	893,215	21,913,300	18,310,000	20,625,956	18,237,017	0	0	4,379,000	5,183,080	4,781,444	5,719,078
대구	422,830	866,193	10,663,462	8,761,890	3,428,130	4,160,905	0	0	1,165,400	858,500	1,565,820	4,237,380
인천	139,834	724,939	4,446,564	7,181,144	10,218,794	6,559,957	0	0	1,731,200	1,120,400	1,638,980	2,757,942
광주	57,336	404,814	5,998,003	4,731,350	7,054,748	4,567,171	0	0	1,555,480	2,976,520	569,280	356,280
대전	110,590	270,083	1,973,911	8,587,045	5,070,354	3,437,977	0	0	483,200	456,540	2,789,210	1,138,467
울산	28,460	338,272	4,113,841	8,493,689	5,213,240	5,969,337	0	0	1,171,000	843,660	1,642,350	1,084,109
세종	0	0	0	0	9,444,411	5,809,445	0	0	302,400	595,660	339,020	221,206
경기	165,502	684,887	5,987,351	12,630,925	91,620,155	118,744,146	0	0	17,641,855	17,160,920	8,030,376	5,575,063
강원	54,300	79,200	9,761,652	39,317,793	95,337,863	86,036,427	0	0	13,177,000	10,936,120	4,918,626	2,621,167
충북	52,821	113,415	5,550,092	9,903,644	61,144,716	59,077,518	1,500,000	1,484,000	5,877,280	9,290,400	9,055,206	16,407,380
충남	74,418	271,495	5,346,333	7,183,334	146,925,992	133,855,324	2,862,000	2,826,000	7,906,800	9,243,060	1,407,784	1,967,527
전북	72,740	1,093,202	7,257,900	5,881,990	234,551,856	265,242,819	0	0	7,791,200	11,326,980	4,857,456	4,200,884
전남	538,604	277,632	12,163,000	12,648,290	202,621,223	155,945,176	0	0	12,068,400	15,585,380	2,138,478	4,726,927
경북	126,346	367,229	10,358,600	14,243,670	203,871,403	260,256,923	2,832,000	2,832,000	12,844,640	16,589,560	2,070,226	7,210,665
경남	128,086	656,356	6,675,420	13,514,870	146,468,870	151,625,190	3,532,000	3,458,000	13,494,200	18,313,160	5,596,348	5,025,304
제주	19,404	460,830	6,239,916	9,046,686	86,383,304	84,019,656	0	0	4,968,000	5,951,600	1,804,256	828,458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계속)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48,429,882	14,090,068	0	200,000	2,160	1,800	2,470,104	5,346,514	46,491,749	81,972,440
부산	37,818,637	7,879,370	616,000	300,000	10,800	10,440	10,110,015	11,830,203	108,345,750	123,713,410
대구	17,972,423	4,594,959	1,600	96,000	9,360	7,920	6,927,535	7,294,451	80,778,861	137,455,410
인천	13,689,653	5,788,380	2,056,000	1,048,000	7,680	7,320	9,075,142	15,134,477	76,907,000	67,117,410
광주	19,594,709	24,121,161	12,000	200,000	10,800	9,360	14,764,903	17,529,555	41,212,076	78,509,410
대전	8,395,611	1,779,786	324,000	422,555	6,480	6,120	4,986,355	15,025,689	57,314,000	56,001,910
울산	15,277,970	3,816,928	1,620,000	1,825,500	7,920	7,560	3,247,400	3,711,210	41,055,000	57,713,410
세종	7,684,148	1,295,126	488,022	80,000	8,640	8,280	515,906	2,741,404	11,765,000	17,854,410
경기	57,521,258	24,019,091	9,686,137	16,774,529	203,520	185,380	22,883,258	31,856,965	133,467,610	127,159,410
강원	29,650,438	7,753,472	23,022,962	23,950,357	157,360	145,460	11,135,154	10,616,297	55,800,600	86,078,410
충북	23,278,162	7,900,258	20,331,300	16,238,626	122,040	111,700	12,287,462	15,932,322	53,258,511	53,340,410
충남	30,836,467	7,515,076	18,632,770	17,515,497	181,200	164,140	17,227,977	12,610,248	46,107,000	59,759,410
전북	43,158,475	9,732,588	19,652,528	15,884,880	166,040	145,380	14,502,412	13,884,035	67,570,660	92,562,410
전남	42,322,083	13,193,720	20,766,100	16,827,779	293,260	265,760	16,222,447	26,474,715	54,514,000	77,612,410
경북	40,177,109	15,241,505	17,584,343	15,153,245	250,600	232,100	24,252,199	22,302,234	74,794,000	122,714,910
경남	70,914,300	14,360,624	17,427,689	18,337,713	225,620	196,180	11,142,267	20,108,935	79,025,000	100,284,410
제주	19,038,639	3,099,733	1,380,330	1,185,638	122,520	102,100	2,794,779	4,818,617	27,670,000	34,988,410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분류

- 분야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구분하였음
 - 본 분석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각각 상위 10개 지역을 표시하였음. 2018년도 기준 가장 많은 공모사업은 농림수산이며, 76건으로 경북이 가장 많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9년도에는 전북이 63건으로 가장 많은 공모 사업 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에 가장 높은 사업비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농림수산이었음. 2018년의 경우 농림수산 분야의 전남 지역이, 2019년의 경우 전북임

〈표 3-22〉 분야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단위: 건)

부처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일반 지방행정		환경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0	0	3	3	2	0	4	5	7	5	23	20	6	4	11	10	3	2	1	0	3	3
부산	0	0	2	2	2	0	4	5	24	24	41	21	10	8	8	9	3	2	0	0	3	4
대구	0	0	1	1	1	0	4	5	9	12	28	20	7	7	10	10	3	2	0	0	5	2
인천	0	0	2	1	0	0	4	4	20	17	30	20	9	8	8	9	3	2	1	0	5	3
광주	0	0	1	2	1	0	3	5	10	9	26	19	5	4	9	7	3	2	0	0	6	4
대전	0	0	1	2	1	0	4	4	11	11	20	12	5	6	12	11	3	2	0	0	2	1
울산	0	0	2	4	2	0	3	4	13	18	22	17	6	6	8	9	3	2	0	0	3	3
세종	0	0	3	3	0	0	3	3	16	11	14	11	4	5	7	7	1	1	0	0	1	2
경기	0	0	3	3	2	0	6	5	58	46	41	23	10	8	10	10	3	2	2	1	8	6
강원	0	0	4	4	2	0	4	5	63	56	40	23	10	7	9	9	3	2	2	2	7	4
충북	1	1	3	2	1	0	5	5	59	47	33	20	5	7	9	9	4	4	1	1	4	5
충남	1	1	4	3	1	0	4	5	63	56	32	24	9	6	9	9	3	2	3	0	3	5
전북	0	0	3	4	1	0	4	4	71	63	34	24	9	7	11	9	3	2	4	2	4	6
전남	0	0	3	3	1	0	5	5	73	59	36	24	5	5	8	10	3	2	1	1	5	5
경북	1	1	3	4	0	0	5	5	76	62	35	22	7	5	11	10	2	2	2	1	4	5
경남	1	1	2	2	0	0	5	6	68	63	34	26	6	8	12	12	3	2	2	3	7	7
제주	0	0	3	3	0	0	4	3	45	35	22	16	7	6	10	11	2	2	1	2	3	3

〈표 3-23〉 분야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분야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	-	9,406,000	22,874,000	9,571,558	-	47,148,386	79,008,739	11,388,086	1,400,086	50,776,292	16,094,303
부산	-	-	6,180,000	11,138,000	506,013	-	118,729,398	130,487,313	50,450,922	50,509,966	41,039,949	9,075,391
대구	-	-	2,556,000	8,918,000	93,375	-	86,481,447	143,818,167	3,439,090	4,264,825	19,923,575	6,082,019
인천	-	-	1,450,000	4,316,000	-	-	80,757,900	71,861,031	17,188,307	28,581,420	15,568,753	8,025,388
광주	-	-	1,504,000	12,162,000	70,000	-	46,291,354	73,809,570	7,077,548	4,776,531	24,562,409	25,520,585
대전	-	-	1,592,000	7,272,500	37,025	-	65,653,633	62,550,002	5,400,834	3,866,652	9,973,133	2,887,900
울산	-	-	1,372,000	15,858,000	8,066,778	-	47,636,750	54,818,323	7,691,160	11,306,717	16,090,222	4,750,852
세종	-	-	3,041,000	3,901,000	-	-	13,570,100	18,485,597	9,941,073	5,897,726	8,826,850	2,186,036
경기	-	-	17,211,000	18,926,000	280,000	-	157,864,747	164,649,942	109,228,212	146,725,210	62,635,058	31,129,255
강원	-	-	5,084,000	12,230,000	745,000	-	54,810,600	83,028,410	129,184,518	126,055,507	34,123,438	12,004,959
충북	1,500,000	1,484,000	3,797,000	7,239,000	40,000	-	55,131,611	57,257,046	86,179,722	87,653,844	26,085,862	10,942,802
충남	2,862,000	2,826,000	7,199,000	8,884,000	451,280	-	43,187,500	62,518,173	190,891,395	186,248,430	35,573,467	13,888,321
전북	-	-	2,872,000	12,817,000	100,000	-	67,170,660	89,087,410	255,900,657	312,091,999	49,524,475	16,397,778
전남	-	-	9,850,000	11,110,000	20,400	-	58,156,167	82,569,557	269,523,917	303,967,018	52,553,583	19,845,470
경북	2,832,000	2,832,000	7,081,000	17,593,500	-	-	74,350,878	113,779,099	235,075,393	306,322,200	48,035,431	23,235,403
경남	3,532,000	3,458,000	2,366,000	9,378,000	-	-	87,564,471	107,357,426	194,203,551	245,281,843	75,361,800	19,063,934
제주	-	-	11,064,000	10,700,000	-	-	17,670,000	27,288,410	110,686,564	129,423,909	21,325,685	5,234,933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계속)

분야	보건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일반 지방행정		환경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1,364,000	1,402,700	17,522,532	26,180,852	22,864,393	26,890,439	19,365	-	570,960	277,960
부산	9,780,852	11,330,336	20,957,762	38,407,407	26,694,744	24,029,078	-	-	4,379,000	5,183,080
대구	6,298,372	4,815,784	32,409,623	62,589,333	12,229,282	12,999,270	-	-	1,165,400	858,500
인천	8,871,739	12,931,722	17,051,180	28,552,806	6,085,544	9,939,086	2,226,000	-	1,731,200	1,120,400
광주	14,287,500	17,192,000	19,331,853	25,527,747	6,567,283	5,087,630	-	-	1,555,480	2,976,520
대전	2,730,800	5,414,136	20,821,499	40,665,582	4,763,121	9,725,512	-	-	483,200	456,540
울산	3,094,301	3,427,939	18,986,344	18,092,315	5,756,191	9,577,798	-	-	1,171,000	843,660
세종	463,415	2,590,903	4,295,501	5,117,232	339,020	221,206	-	-	302,400	595,660
경기	21,473,535	28,462,430	39,316,017	53,159,647	14,017,727	18,205,988	5,146,000	940,000	17,641,855	17,160,920
강원	10,742,295	10,056,614	16,615,102	32,617,652	14,680,278	41,938,960	6,548,000	8,980,000	13,177,000	10,936,120
충북	11,782,843	15,351,029	19,559,946	26,928,985	14,605,298	26,311,024	890,000	1,089,000	5,877,280	9,290,400
충남	10,823,358	10,030,155	24,616,164	26,427,986	6,754,117	9,150,861	3,278,635	-	7,906,800	9,243,060
전북	13,773,249	12,322,168	25,764,211	37,376,207	12,115,356	10,082,874	8,604,000	4,300,000	7,791,200	11,326,980
전남	15,993,892	22,219,416	47,119,973	75,562,153	14,301,478	17,375,217	4,072,000	1,400,000	12,068,400	15,585,380
경북	13,147,516	17,493,545	37,035,512	69,131,863	12,428,826	21,454,335	3,992,000	200,000	12,844,640	16,589,560
경남	10,062,648	14,918,484	36,689,006	61,250,751	12,271,768	18,540,174	1,025,000	4,389,000	13,484,200	18,313,160
제주	2,552,832	2,701,288	7,552,433	16,244,968	8,044,172	9,875,144	1,077,000	2,814,000	4,968,000	5,951,600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회계주체별 분류

- 회계주체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음
 - 2018년에는 기금(702개), 일반회계(446개), 특별회계(372개), 균특회계(235개) 순서이며, 2019년에는 기금(473개), 일반회계(392개), 특별회계(363개), 균특회계(220개) 순대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실시되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건수와 금액을 살펴볼 때, 대부분 기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24〉 회계주체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단위: 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균특회계		기금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27	23	8	6	7	8	21	15
부산	32	22	11	13	13	15	41	25
대구	21	23	6	5	10	9	31	22
인천	22	19	13	14	14	9	33	22
광주	22	20	8	7	9	8	25	17
대전	19	16	7	8	10	9	23	16
울산	17	14	9	15	8	8	28	26
세종	14	13	10	10	8	5	17	15
경기	34	26	28	25	18	11	63	42
강원	34	28	33	30	19	19	58	35
충북	29	25	32	28	14	15	50	33
충남	28	28	38	34	19	17	47	32
전북	32	30	36	40	18	16	58	35
전남	26	24	39	33	20	22	55	35
경북	31	25	36	38	17	17	62	37
경남	31	33	39	38	19	20	51	39
제주	27	23	19	19	12	12	39	27

〈표 3-25〉 회계주체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균특회계		기금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35,607,014	38,674,425	9,177,744	10,111,960	66,739,528	108,243,082	59,087,287	17,099,612
부산	36,562,246	63,237,280	8,566,519	29,588,524	178,019,827	154,258,189	55,570,049	33,076,578
대구	32,542,532	99,719,891	1,527,726	2,008,726	94,931,480	123,954,361	35,594,426	18,662,920
인천	16,850,453	24,619,682	8,116,735	29,753,193	99,410,091	89,573,051	26,553,344	21,381,927
광주	19,823,921	28,619,510	1,648,085	12,761,120	60,647,500	84,732,081	39,127,921	40,939,872
대전	17,892,066	31,648,110	1,139,554	5,263,572	73,614,983	78,043,637	18,808,642	17,883,505
울산	17,652,916	13,097,335	4,227,688	18,031,631	57,639,327	70,875,459	30,344,815	16,671,179
세종	4,228,050	4,545,498	2,252,868	6,713,181	23,571,814	23,482,187	10,726,627	4,254,494
경기	52,995,487	77,903,006	40,323,275	63,255,070	192,745,489	203,714,457	158,749,900	134,486,859
강원	33,883,029	48,211,141	61,240,550	67,413,205	110,247,681	169,584,079	80,338,971	52,639,797
충북	24,536,187	39,969,231	51,001,983	54,178,535	81,026,661	88,091,994	68,884,731	61,307,370
충남	27,198,040	34,603,591	88,851,376	109,006,174	127,750,547	144,649,097	89,743,753	40,958,124
전북	37,830,009	49,464,338	93,316,627	164,670,818	205,124,917	225,759,133	107,344,255	65,908,127
전남	50,612,532	72,819,191	146,406,681	207,804,338	160,064,977	208,558,866	126,575,620	60,451,816
경북	38,860,790	83,945,890	92,550,123	172,965,936	132,291,154	178,447,073	183,121,129	153,272,606
경남	42,429,511	73,120,788	93,251,203	151,158,112	145,548,180	184,912,172	155,331,550	92,759,700
제주	10,626,588	18,556,996	35,999,324	38,320,904	45,228,059	71,700,686	93,086,714	81,655,666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법정/비법정 분류

○ 법정/비법정으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음

〈표 3-26〉 법정/비법정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단위: 건)

법정/비법정	법정		비법정	
	2018	2019	2018	2019
서울	58	47	5	5
부산	87	67	10	8
대구	63	52	5	7
인천	72	56	10	8
광주	59	47	5	5
대전	54	46	5	3
울산	54	57	8	6
세종	44	38	5	5
경기	130	93	13	11
강원	131	99	13	13
충북	116	91	9	10
충남	119	100	13	11
전북	128	107	16	14
전남	125	102	15	12
경북	132	106	14	11
경남	127	114	13	16
제주	91	75	6	6

〈표 3-27〉 법정/비법정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법정/비법정	법정		비법정	
	2018	2019	2018	2019
서울	72,538,516	156,590,099	4,694,025	17,538,980
부산	252,049,612	241,184,187	26,669,029	38,976,384
대구	144,558,093	188,406,784	20,038,071	55,939,114
인천	133,759,628	144,214,107	17,170,995	21,113,746
광주	107,062,784	146,895,268	14,184,643	20,157,315
대전	95,476,045	105,530,543	15,979,200	27,308,281
울산	96,705,503	105,689,637	13,159,243	12,985,967
세종	36,610,645	35,362,069	4,168,714	3,633,291
경기	416,852,615	435,112,050	27,961,536	44,247,342
강원	248,167,439	293,322,901	37,542,792	44,525,321
충북	208,930,926	220,032,630	16,518,636	23,514,500
충남	306,593,202	295,006,456	26,950,514	34,210,530
전북	398,698,519	451,790,688	44,917,289	54,011,728
전남	425,940,029	467,849,112	57,719,781	81,785,099
경북	410,512,115	516,156,231	36,311,081	72,475,274
경남	398,962,695	439,560,957	37,597,749	62,389,815
제주	177,293,043	195,032,842	7,647,643	15,201,410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상/자본의 분류

- 경상과 자본, 혼합으로 구분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와 금액은 아래와 같음

〈표 3-28〉 경상/자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단위: 건)

경상/자본	경상		자본		혼합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42	35	19	15	2	2
부산	59	37	35	35	3	3
대구	45	39	21	18	2	2
인천	47	39	32	23	3	2
광주	44	33	18	17	2	2
대전	37	31	20	16	2	2
울산	38	36	21	24	3	3
세종	27	25	21	17	1	1
경기	71	52	69	49	3	3
강원	74	55	68	55	2	2
충북	62	48	60	51	3	2
충남	60	50	69	58	3	3
전북	71	54	71	65	2	2
전남	67	50	70	61	3	3
경북	70	52	73	62	3	3
경남	64	56	73	71	3	3
제주	49	46	46	33	2	2

〈표 3-29〉 경상/자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경상/자본	경상		자본		혼합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	99,028,762	119,432,244	62,335,376	45,575,018	9,247,435	9,121,817
부산	116,957,191	145,093,769	150,013,097	124,639,684	11,748,352	10,427,118
대구	92,500,470	128,417,623	65,970,278	108,699,325	6,125,416	7,228,950
인천	95,033,444	104,770,585	51,846,445	55,088,708	4,050,734	5,468,560
광주	62,887,014	107,061,115	53,223,799	55,956,494	5,136,614	4,034,974
대전	63,070,872	88,703,440	39,934,150	33,144,709	8,450,223	10,990,675
울산	67,707,289	76,032,572	35,477,247	32,769,847	6,680,210	9,873,185
세종	17,840,088	11,320,542	20,209,171	24,058,631	2,730,100	3,616,187
경기	204,708,851	247,338,390	204,847,661	189,195,583	35,257,639	42,825,419
강원	115,904,116	188,079,363	167,935,815	147,545,659	1,870,300	2,223,200
충북	97,260,644	117,962,040	125,375,997	120,708,039	2,812,921	4,877,051
충남	108,831,062	148,737,262	222,148,736	176,915,466	2,563,918	3,564,258
전북	147,920,387	191,611,382	295,550,681	311,097,832	144,740	3,093,202
전남	185,857,118	245,759,521	286,403,921	296,639,911	11,398,771	7,234,779
경북	163,760,577	258,475,812	279,094,395	326,892,775	3,968,224	3,262,918
경남	155,657,408	223,326,763	271,773,479	270,086,637	9,129,557	8,537,372
제주	47,819,288	58,915,889	137,037,994	148,857,533	83,404	2,460,830

주: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 지역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중심 분류

- 기준보조율을 중심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구분하였음(2018-19년도 총 307건)
 - 기준보조율은 10%, 50% 등 정률로 제시되거나 20~30%, 50~70% 등 범위의 정률, 정액으로 제시되는 3가지의 형태가 있음
 - 먼저 범위가 없는 정률과 정액으로 제시된 사업들의 건수를 보면 31~50%가 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30〉 정률/정액 기준보조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단위: 건)

정률기준 보조율	0~10	11~30	31~50	51~70	71~90	91~100
건수	1	29	186	22	7	27

- 먼저 범위가 있는 정률로 제시된 사업들의 건수 역시 30~40%, 30~50%가 각각 4건, 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1〉 범위 정률 기준보조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단위: 건)

범위 기준 보조율	20~ 40	20~ 60	30~ 100	30~ 40	30~ 50	30~ 70	30~ 80	40~ 50	40~ 60	45~ 55	50~ 100	50~ 60	50~ 70	50~ 80	60~ 70	60~ 90	70~ 100	70~ 80
건수	3	2	1	4	5	2	1	1	2	1	2	1	3	1	1	2	2	2

- 공모 선정 전 제시된 기준보조율과 실제로 지방비 부담의 매칭을 비교한 결과 기준보조율 보다 더 높은 지방비를 매칭한 사업은 총 6개임(2019년도 기준)
 - 그러나 그 차이 범위가 크지 않음

〈표 3-32〉 기준보조율 대비 높은 지방비 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기준보조율	2019 실제 보조율	국비	지방비	총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자율)	50	46	5,037,000	5,899,000	10,936,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	45	16,664,000	20,584,577	37,248,577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50~70	43	1,723,000	2,257,150	3,980,150
인력양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50	30	200,000	466,666	666,66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70	69	1,100,000	498,288	1,598,288
해양관광육성	50	49	8,230,000	8,400,000	16,630,000

□ 100억 이상 대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분석

- 마지막으로 100억 이상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부처별, 지역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먼저 100억 이상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이었으며, 평균 국비 보조율의 경우 고용노동부(70%), 환경부(67%), 산림청(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33〉 100억 이상 부처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

(단위: 천원)

부처	국비	지방비	2019 합계	평균 : 보조율
고용노동부	124,730,300	34,910,356	159,640,656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00,000	5,300,000	10,600,000	50%
국토교통부	873,525,000	711,671,215	1,585,196,215	53%
농림축산식품부	731,914,000	513,718,505	1,245,632,505	56%
문화재청	16,760,000	16,760,000	33,520,000	50%
문화체육관광부	333,153,000	284,411,244	617,564,244	44%

부처	국비	지방비	2019 합계	평균 : 보조율
보건복지부	97,566,000	75,519,255	173,085,255	53%
산림청	52,924,000	36,573,623	89,497,623	62%
산업통상자원부	31,600,000	37,377,779	68,977,779	47%
여성가족부	6,334,000	4,057,500	10,391,500	61%
중소벤처기업부	128,687,000	77,394,971	206,081,971	57%
해양수산부	257,212,000	152,507,005	409,719,005	52%
행정안전부	280,021,000	305,000,851	585,021,851	49%
환경부	60,399,000	46,660,000	107,059,000	67%
총합계	3,000,125,300	2,301,862,304	5,301,987,604	55%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경기과 경북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3건), 경남(1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4〉 지역별 100억 이상공모사업 건수

(단위: 건)

지역/연도	2018	2019
서울	4	5
인천	2	4
경기	10	14
부산	9	7
대구	5	4
광주	3	4
대전	3	4
울산	3	2
세종	1	1
강원	4	6
충북	2	2
충남	5	7
전북	7	10
전남	12	13
경북	11	14
경남	10	12
제주	3	6
합계	94	115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공모사업 금액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선 분석에서 비수도권의 공모사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계를 볼 때,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경기의 경우 가장 많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를 나타내고 있음

〈표 3-35〉 수도권/비수도권 100억 이상 공모 사업 내역

(단위: 천원, %)

		2018년(공모)				2019년(공모)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국고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국고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서울	31,778,600	39,716,814	72,140,399	44.05	50,523,572	60,758,688	112,567,751	44.88
	인천	34,980,500	40,326,500	75,307,000	46.45	52,858,675	48,182,518	101,041,193	52.31
	경기	127,835,103	112,440,446	249,386,549	51.26	191,308,897	125,333,058	338,142,890	56.58
	수도권 평균	64,864,734	64,161,253	132,277,983	47.25	98,230,381	78,091,421	183,917,278	51.26
비 수 도 권	부산	95,911,864	85,144,972	197,465,989	48.57	96,255,833	88,574,200	187,884,688	51.23
	대구	57,667,545	47,396,534	109,152,242	52.83	90,910,960	92,119,030	183,029,990	49.67
	광주	25,786,100	29,424,976	55,211,076	46.70	48,448,159	58,554,508	107,002,667	45.28
	대전	34,260,680	36,244,520	70,505,200	48.59	47,004,536	41,664,927	88,669,463	53.01
	울산	29,055,728	22,502,356	51,558,084	56.36	23,557,000	23,557,000	47,114,000	50.00
	세종	5,220,000	5,220,000	10,440,000	50.00	7,350,000	7,350,000	14,700,000	50.00
	강원	32,192,202	34,000,403	72,168,610	44.61	86,257,504	66,599,914	157,051,418	54.92
	충북	24,612,000	26,149,511	50,761,511	48.49	28,116,825	22,276,551	50,393,376	55.79
	충남	49,580,366	50,861,779	107,456,810	46.14	103,973,482	67,934,247	177,114,109	58.70
	전북	108,089,636	103,035,469	218,093,903	49.56	162,885,072	117,629,783	290,276,135	56.11
	전남	121,098,247	97,035,162	243,758,234	49.68	225,104,832	142,434,127	371,953,639	60.52
	경북	92,068,218	87,114,810	213,929,538	43.04	194,877,183	142,488,369	369,867,752	52.69
	경남	100,811,153	109,647,976	231,795,562	43.49	180,120,682	116,662,884	316,390,219	56.93
	제주	20,093,000	23,402,000	74,673,333	26.91	38,845,000	44,017,500	114,814,000	33.83
	비수도권 평균	56,889,053	54,084,319	121,926,435	47.00	95,264,791	73,704,503	176,875,818	52.05
	전체평균	58,296,526	55,862,602	123,753,179	46.87	95,788,130	74,478,665	178,118,429	5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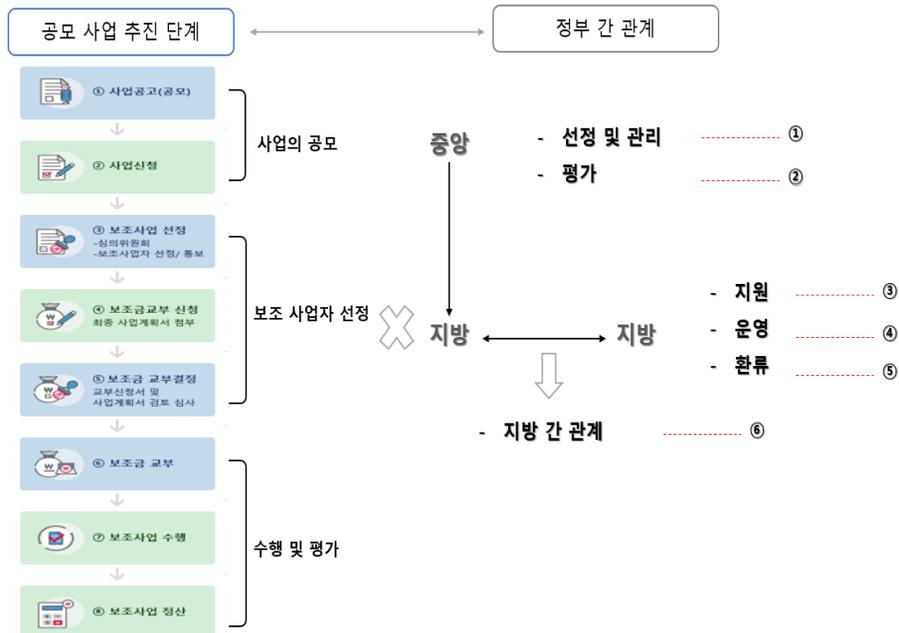
주: 총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의 합으로 구성

제4절 운영단계별 문제점 분석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단계별 운영체계 문제점 진단

- 선행연구, 실태분석 및 지역별 대표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추진 단계를 기반으로 정부 간 관계, 즉 수행 주체들의 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중앙과 지방, 지방 간 관계 속에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각 추진 단계와 결부하여 살펴 볼 때 해당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3-9〉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단계와 정부 간 관계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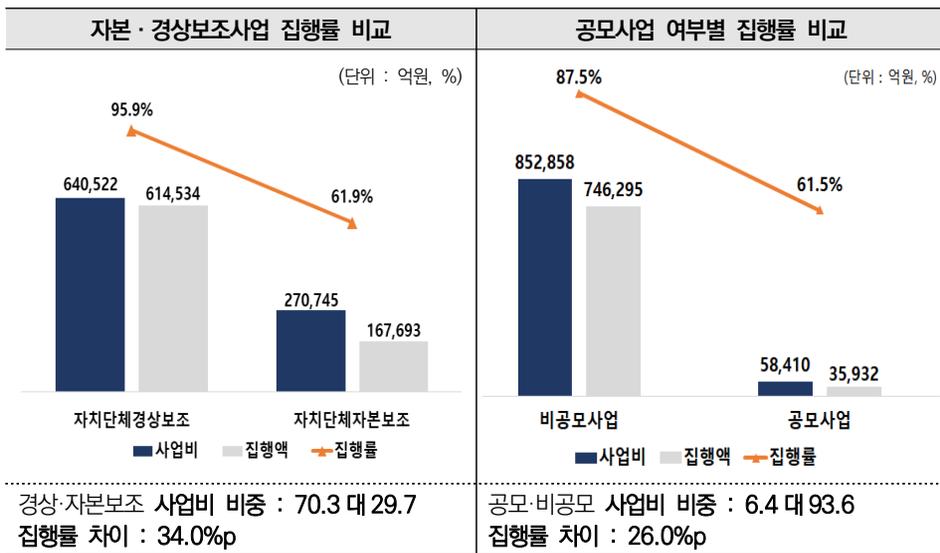
□ 중앙 정부의 주도 하 선정 및 관리, 평가 단계

- ①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모사업 선정 적절성, 시기 적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공모사업 선정 적절성이란, 실제로 본 사업이 공모형 사업으로 적합한가의 문제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세부적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 자구노력을 통한 사업 진행이라면 실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보조사업이나 복지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기 적정성이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명할 수 있음. 지방정부는 실제로 재정운영 시 조기 신속집행제도 등 일련의 계획과 예측성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인센티브로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만약 그 공모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방정부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조기신속집행제도 등과 맞물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음. 또한 이불용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때, 뒤늦은 공모사업은 이불용액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됨
 - 지방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모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대형 공모는 정책이 바뀔 때 주로 발생하고, 기한이 급박하다. 사전절차 없이 제안서부터 보낼 수 밖에 없다. 공모에 선정돼도 집행은 2-3년 정도 걸리는 등 지체되는 사유도 있다.(시흥시 노00, 9.17)

중앙부처에서 국가 정책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지역 공모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강요 및 사업 떠넘기기 경향이 존재한다...(중략) 공모선정 이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가 이행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시기가 진행되고 있다.(수원시 정00, 9.17)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중앙 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음
- 공모사업 시기는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공모사업의 경우 10개월 지원사업인데 2월에 공모가 결정되면 추경에 반영 등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실제로는 6~7개월분만 발생하는 등의 문제임
- 사업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연중 확정된 후 자치단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발주·계약 등 단계별 절차 추진에 상당기간이 소요됨
 - 아래 그림과 같이 공모사업 집행률은 61.5%로 전체 평균보다 24.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 행정안전부(2019). 2019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보고.

- ②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은 **평가 지표의 적정성과 평가의 전문성** 부분임
 -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청년 일자리를 증가 시키거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그러나 실제 평가 지표를 보면 ‘청년 만족도’ 등으로 사업의 목적과 평가 지표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질과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오고 있음
 -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이 느슨하면 기대만큼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순환보직 이동의 인사관행이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임의적으로 선정·추진되는 공모형 사업의 경우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이재원 외, 2021)

□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의 지원, 운영 및 환류 단계

- ③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공모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어려움,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사전 검토 미비 및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먼저 공모형 사업은 다양한 중앙부처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선정하는 기준이 다름. 또한 사업마다 선정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투입해야 하는 자원과 인력이 상당히 소모적일 수 있음. 공모 사업이 선정되는 많은 경우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공모 주체별, 공모 사업별 기준을 습득하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일 수 있음
 - 또한 지원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전문성이 부족함

- 덧붙여 공모 사업은 반드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사업 부서의 경우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하나의 성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단 공모 선정을 목표로 하고 사후에 알리는 경우가 있음. 이는 두 부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 수립에도 문제를 야기 시킴
- 시흥시 노00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광역과 지자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

공모선정 후 예산부서와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도비 매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부서는 이미 시장 결재 받았다고 말한다....(중략) 예산부서 편 안된다. 홍보를 잘 하라고 말한다...(중략)
 재원확보 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모나트리움 선언 이 후에 취득등록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도 기준보조율 낮추고, 나머지 공모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공모를 진행했으니 스스로 총당하라고 말한다. (시흥시 노00, 9.17)

○ ④ 국고보조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의 부담 정도가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부처별로 자부담 비율도 상이하며, 선정 기준 자체도 자부담 비율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력이나 자립도가 낮은 경우 공모 사업 자체를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음. 실제 지방정부의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가운데, 기존의 계획되지 않았던 공모 사업의 자부담 보조금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중앙정부의 지자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장려 및 공모요건으로 지자체 부담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있었는데 도로교통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부담률이 50%이었다. (수원시 정00, 9.17)

○ ⑤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 부분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3년단위 일몰제로 운영됨. 기획재정부에 의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이 시행됨.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연구해봐야 하는 부분임.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할만한 환류장치가 존재하는가의 논의가 요구됨

□ **정부 간 관계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⑥ **지방 간 과도한 경쟁 및 갈등, 서비스 중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지방정부 간 재정력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사업이 수도권, 광역에 집중되어 선정될 수밖에 없는 비판도 존재함. 또한 지방정부 지리적 중첩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가능성, 인접효과로 인한 경쟁 유발, 갈등 등이 지방 간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제4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사례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사례분석

제2절 사례조사 시사점

1. 스마트시티 혁신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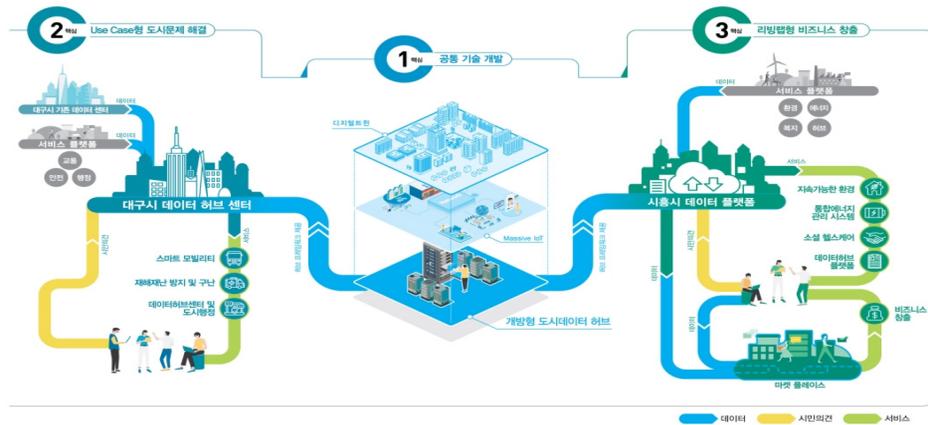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요

-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사업자를 선정함
- 본 사업은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정연구 과제 개발기술 적용 및 실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 : 00시 00동 일원 (일부지역 확대)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22. 12월
 - 총사업비 : 451억원(국비 262.3, 시비 72.2(현금46.2, 현물26), 민간 116.5)
 - 공모부처 :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정과정 : 3단계(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심사, 3차 운영위원회 종합심사)

〈그림 4-1〉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계획 예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가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대구시, 시흥시)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경과

○ 00시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8.03~05월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및 공모
- '18.06~07월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심사
- '18.07.10월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 '18.08~09월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기관선정 공고
- '18.09.07.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업무협약
- '18.08~11월 :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
- '18.11월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착수 및 워크숍
- '18.12월 : 스마트시티사업단 협의체 구성 및 워킹그룹 1차 총회
- '19.03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5과제 지정연구기관 선정
 - ※ 3-5과제 지정연구기관으로 지정했던 한국0000대 탈락 (2018.11)
- '19.04월 : 전문가자문단, 행정협의체 구성
 - ※ 환경/에너지/복지/데이터허브 연구과제별 전문가자문단 19명, 행정협의체 27명 구성
- '19.05월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3차 핵심 워크숍 개최

- '19.05월 : 실증지원센터 개소(배곧 혁신성장사업단 內)
- '19.05월 : 지자체 제안과제(지정연구과제)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19.07~10월 : 세부과제별 Stage-Gate 설계, 검토, 확정
- '19.10월 : 제2회 스마트시티사업단 참여기관 전체 통합 워크숍
- '19.11월 : 지역수요기반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정연구과제(4개) 선정 및 착수
- '19.11~12월 : 세부과제별 관문심사 및 자체평가, KAIA 단계 평가
- '20.05월 : 지자체 제안과제(자유제안과제) 공모, 문화·예술·관광분야

□ 해당 사례 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 지원 및 선정 단계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선도적 기술력 접촉, 시민 편익 제 공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도시 이미지 및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따른 상징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자치단체의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임
- 공모 지원 시 총사업비 내 자치단체 부담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현물 출 자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게 됨
- 해당 공모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지자체 직접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산 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사업의 주체가 아닌 연구원 및 사업단을 지원하는 객체의 역할 을 담당하는 모습임

○ 운영 단계

-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한 이후 연구기관 및 기업과 공모하는 과정 에서 사업 일정과 방향에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추진계획보다 지연됨

○ 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 종료 후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남은 기자재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철거, 폐기 또는 인수라는 의사결정 상황에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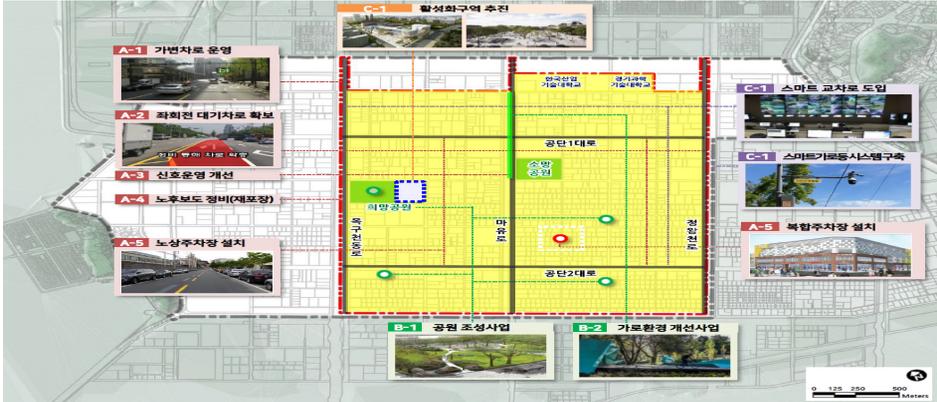
면해 있고, 운영비 부담 주체 또한 지자체인지 불명확하여 후속적인 부담의 문제가 존재함

2. 00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요

- 00국가산업단지의 부족한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3월(5개 국가산업단 선정) 선정하였음
- 본 공모사업은 업종을 재배치하고 복합용지를 마련하여 공간을 재편하고, 노상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노후보도 재정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현재 복합주차장 확보를 위해 1개소 부지 매입(약 2,000㎡)과 소공원 조성을 위해 3개소 부지 매입(약 3,300㎡)을 추진 중이며, LH와 협력하여 희망공원 활성화 구역 개발구상을 추진하고, 00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협의 중임
- 사업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 : 00국가산업단지(00시 00동 일원)
 - 사업면적 : 6,683,300㎡
 - 사업기간 : 2017. 3월 ~
 - 총사업비 : 43,256백만원(국 21,628 도 4,326 시 17,302)
 - 공모부처 : 국토교통부
 - 선정과정 : 3단계(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심사, 3차 운영위원회 종합심사)

〈그림 4-2〉 00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경과

○ 추진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7.03월 : 제4차 재생사업지구 대상단지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18.02월 : 00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용역 착수
- '18.05월 : 기업실태조사(~2018. 8.)
- '18.09월 : LH와 산단재생사업 기본협약 체결
 - ※ 협약 주요내용 : 재생사업(재생계획, 재생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 활성화구역 계획 수립 지원, 국도비확보 협력, 스마트산단 모델마련 등
- '18.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착수
- '18.12월 : 입주기업 및 근로자 설명회 개최(90여명 내외)
- '19.3월 : 수시 지방재정 증양투자심사 완료
- '19.6월 : 재생추진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개최
- '19.8월 : 재생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증(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 '19.11월 : 총사업비 1차 협의(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착수

- '19.1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부) /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 착수
- '20.01월 : 총사업비 협의 완료
- '20.04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유보 : 현장심사 후 의결)
- '20.06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심사 및 재심의 완료
- '20.07월중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및 고시 예정)

□ 해당 사례 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 지원 및 선정 단계

- 재생사업지구 공모 선정 이후 해당사업추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심의 및 사업고시, 활성화구역 설정, 추진협의체 구성 등 행정적 처리절차만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재정 등 다양한 부담을 수반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가산단 조성 후 교부세 수요로 00시는 10억원 수준의 관리비를 받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비 216억원의 투자는 매우 큰 재정적 지원인 반면 국가산단 재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173억원에 달하며, 기초시군 세입대비 광역세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에서는 10% 부담에 그쳐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기초지자체의 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큰 실정임

○ 운영 단계

- 재생지구 조성 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토지매입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총사업비 내 사업축소의 상황에 직면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난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앙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매우 늦어짐

○ 평가 및 환류 단계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당초 매우 큰 기대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내 토지매입비 및 관급공사 건립비 등을 검토했을 경우 총사업비 432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는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침

3. 000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요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000형 산업단지 그린뉴딜을 선정하여 산단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
 - 산업단지 내 AI기반 실시간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공급 최적화 시스템 구축,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및 산단 e-그린버튼 통합운영센터 구축,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 및 효율향상 인프라 구축하고자 함
 - 道 기후에너지과·환경정책과·경기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과 협업 중임
 - 사업비 규모·사업 추진 방식 등이 미확정이라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영세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을 요청 중임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에서만 지방비 부담 필요)
 - 시에서는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총사업비 200억원(국 120억, 시 40억, 민간 40억)와 희망공원 내 수소충전소 설치(총사업비 60억원(국 36억, 시 12억, 민간 12억)를 요구함
- 사업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 : 000 산업단지(0000국가산단, 0000·00일반산단)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72,600백만원(국 32,650 / 도 26,610 / 시 8,540 / 민간 4,800)

- 공모부처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일자리위원회
- 사업비 규모·사업 추진 방식 등 미확정 사항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22.01~12월 : 산단대개조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지속)
 - '22.01~04월 : 사전타당성조사용역(BRT) 추진
 - '22.04~08월 :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선교통체계종합계획 반영 추진
- ※ 영세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 요청 중임
- ※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에서만 지방비 부담 필요

□ 해당 사례 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 지원 및 선정 단계
 - 기초지자체 신청 공모의 경우 광역은 10%부담하였으나, 광역신청사업의 경우 11.8%를 시군부담으로 하고, 해당 사업비 726억원 또한 3개 산단에 지원됨에 따라 실질 뉴딜을 도모할지에 대하여는 검토 필요
- 운영 단계
 - 해당 사업비 대부분은 연구원과 공단, 대학 연구센터 등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실질 기초자치단체 국가산단의 노후개선 또는 뉴딜보다는 대부분 연구비로 소진되며, 시반영 요구사업에 대한 반영 여부 결정이 기초가 아닌 협업기관 중심으로 의사결정 추진됨
- 평가 및 환류 단계
 - 중앙정부 뉴딜의 파생적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공모를 광역자치단체가 새로운 추가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또한 이를 모방하여 00형 아동돌봄, 00형 청년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초 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시군별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유사 동일 사업의 파생적 공모사업 등이 난무함

4. 00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요

- 향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을 알리는 환경교육 거점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상설, 기획, 체험전시, 4D영사관, 교육, 세미나 및 국제비즈니스실을 갖춘 체험전시관을 설립하고자 함

〈그림 4-3〉 00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전경



- 사업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 : 00시 00동 2133번지
 - 공모부처 : 환경부
 - 사업기간 : 2010~2013년
 - 총사업비 : 200억원(국 100 / 시 100)

□ 해당 사례 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 지원 및 선정 단계

- 자치단체별로 공모 선정 및 신청시 예산부서 등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부서의 신청에 따라 지원이 진행되면서 공모사업 확보실적에 대한 홍보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강조하나 자치단체의 건립비 100억원 부담 및 향후 운영비 부담(최초 6억원에서 현재 10억원, 전액 시비, 연간 30% 수준 증가)에 대한 고려는 적음

○ 운영 단계

- 2010년도 공모선정으로 2013년 조성완료 목표였으나, 2016년도 준공되면서 다양한 사업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 및 부지선정 적절성, 투자심사 예산편성, 도시관리계획 등 다양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사업추진에 난항 발생하여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음
- 과거 정부정책 홍보관 개념의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홍보가 필요하나, 조성계획 및 공간 구성 등 실질 수요(시민)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지원 공모로 자치단체 운영경비 누적 부담 가중됨

○ 평가 및 환류 단계

- 전 정부정책에 따라 시민수요 없는 국비 지원에 따른 목적사업 운영(국비 지원시 최소 5년간 목적사업 유지 필요)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가중 및 운영세입은 극히 저조함
- 투자액 100억원 대비 실질수입은 31백만원이지만 매년 고정경비인 운영비 부담이 10억원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중앙정부 공모선정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

제2절 사례조사 시사점

- 사례조사 결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정액부담 외 부수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인식함
 - 또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은 예산규모가 크고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 위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제한 및 표준 공모 지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함
 - 먼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중앙부처 산하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해당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받은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교 및 자치단체 참여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각종 공모방식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지만 50%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재원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하기관 출자·출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제한해야 함
 - 특히, 중앙부처 산하기관 출자·출연사업의 경우 재원이 국고재원의 성격과 달라 회계상 처리가 모호(원칙:부담금, 현실:국고)하므로 정산을 위해 국고로 세입처리하여 사업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현실과 회계처리 상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자치단체 예산은 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외 국가사무 또는 국가시설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부처가 국고전액으로 지원하기도 함
 - 공모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설정 및 심사 과정상 인센티브 심사

표 작성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경상적경비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요구됨

- 공모신청 단계에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 근거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선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다만, 이러한 제한규정이 국가주도 공모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제외 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요구(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는 배치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의 발생하는 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규정·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호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편성시 공모사업을 별도 관리하는 방식의 시스템적 개선 필요함

제5장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실태분석의 요약

- 첫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데 대한 실증 분석 결과, 18년도 대비 19년도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음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비 부담률이 전년도 대비 집중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제주, 대구, 광주, 대전 등)
- 둘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약 50% 이상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지역 인프라와 우수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수도권에 경우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2019년 기준 44.28%이나,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은 평균치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18년 대비 19년 공모사업의 선정 수 또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님에도 지방비 부담률이 컸음
 - 구체적으로 2019년 신규 공모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광역 간 비교 결과, 제주 5건, 대구 4건, 광주 3건, 대전 3건으로 전체 91건 중 15건(16.5%)에 해당하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우 신규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금액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선 분석에서 비수도권의 공모사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계를 볼 때,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경기의 경우 가장 많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비를 나타내고 있음

□ 운영단계별 문제점 분석의 요약

- 첫째, 공모사업 선정 적절성과 시기의 적정성의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기준을 투명화 해야 하며, 그 추진 시기로 인해 이불용액 등 예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둘째, 공모사업 평가지표나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 사업의 목표치,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 하다는 논의가 전개되었음
- 마지막으로 운영 상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유발 요소가 존재하였음
 - 또한 지원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전문성이 부족하였음
 - 지방정부 간에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재정력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사업이 수도권, 광역에 집중되어 선정될 수밖에 없는 비판도 존재하였음
 - 또한 지방정부 지리적 중첩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가능성, 인접효과로 인한 경쟁 유발, 갈등 등이 지방 간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음

□ 사례 및 인식조사 분석의 요약

- 사례 및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거나 지원 이후 정액부담 외 부수적인 재정 부담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등의 논의가 중심임
 - 재정력이 높은 수도권 중심의 대형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논의와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초래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제한 및 표준 공모 지침 개발 등이 운영상 문제점도 존재함

제2절 정책제언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관, 해외사례 검토 및 실태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재원 분담 체계 개선 :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매칭수준에 있어서 일반 국고보조사업보다 지방비 부담이 약 12% 가량 높음(19년도 기준)
- 소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도 많기 때문에 전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약 44%로 나타났으나 100억 원 이상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훨씬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별 전체 지방비 부담률은 약 55%로 2조 3천억 원 규모임
 - 고용노동부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70%, 약 390억 원이 소요되었음. 그 다음 환경부의 67%, 약 46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 대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주장을 일견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100억 원 이상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공고 당시 5:5의 매칭 비율일지라도 선정을 위해서 더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음
- 대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단순히 지방비를 더 높게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등의 재원분담 불균형 행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추진 제한 등의 표준 지침 설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회계처리의 사유로 산하기관 출자·출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제한하는 등 실제 국고보조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논의가 요구됨
 - 표준 공모지침을 마련하여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입장에서 직접 공모 및 사업정산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확보 후 다양한 사업을 산하기관에 위탁업무 또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저예산 고효율 방안으로 사업추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또한 예산확보 후 지방보조금 또는 산하기관 및 수탁기관에 해당사업추진을 의뢰하는 답습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파생적인 공모사업 난발에 대한 공모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사전 협의 과정의 신설

- 지방재정법 22조, 25조, 26조에 근거하여 사전 협의 과정을 신설함
 - 중앙부처에서 공모과정에서 “중앙부처 예산확보→공모계획→공모→자치단체 선정”의 현행에서 “중앙부처 예산확보→공모계획→행정안전부 협의(신설)→공모→자치단체 선정”으로 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와 같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7)해야 함
 - 각종 연구 및 기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위탁사업으로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권장하거나 공모를 통한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은 법령으로 정해져야 하며,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법령을 통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사업 체계 확립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법체계를 재확립해야 함
 - 연례반복적인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포함하여 자치단체가 공모사업 유치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의 재분류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함
 - 건립사업의 경우, 초기 시군 재원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처지원 비율부담 규정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의 공모 난발을 사전에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새로운 공모 시스템 확립: 공모사업 총량제 도입 등

- 표준적 공모방식의 확립을 위한 공모 시스템 재정립을 고려해야 함
 - 자율적 공모에서 표준적 공모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방보조금의 경우 자본적, 경상적, 행사성 보조금으로 구분하듯, 국가공모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에 대하여 자본적 공모, 경상적 공모, 행사성 공모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모방식 도입을 검토할 시점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자체사업, 일반보조사업 외 공모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별 공모사업 건수 및 예산총액의 일정비율(%)이내 공모사업 추진토록 총량제 도입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삼주, 윤태섭. (2016).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9
- 이재원, 박병희, & 이종하. (202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6(1), 117-151.
- 박병희 외. (2020).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보고서.
- 조달청. (2008). 미국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관리
- 최병호 외. (201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자원분담체계 개선. 한국지방재정학회 보고서.
- 손희준 외. (2015). 지역개발분야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자료.
- 행정안전부.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한국재정정보원. (2018).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정책자료.
- 행정안전부(2019). 2019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장애인 안전교육 선정평가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공고문
- Colorado Common Grant Application User's Guide, CO
- Human service grants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A.
- 일본 총무성 '지방재정백서(2019년도판)'
- 일본 총무성 『레이와2년(2020)년도 지방재정계획』